

연구결과 요약집

2008

序 言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과 재정정책 등 경제 관련 정책들을 연구·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2년 9월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개원 이후 저희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경제현안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고 폭 넓은 연구활동을 펼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조세제도의 확립과 세무행정의 발전을 통해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과학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조세 및 재정정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는바, 보다 선진화되고 합리적인 정책의 연구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국가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조세 및 재정분야에 대한 본원의 연구활동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나온 연구결과를 한 데 모은 이 연구결과 요약집이 아무쪼록 관련 연구자들은 물론 정부와 기업, 일반 국민들에게도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8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직무대행 홍 범 교

일 러 두 기

1. 본 책자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2007년 이후 발행한 보고서의 내용 요약 및 주요 목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2007년 이전에 발행한 보고서는 '1993~2006 발간도서목록'에 수록하였습니다.
2. 지면 관계상 용역보고서, 번역자료, 일부 기타보고서 등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3.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전문은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pf.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4. 본 책자에 수록된 보고서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연구보고서	9
07-01 세무조사제도 개혁방안	11
07-02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20
07-03 출산을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24
07-04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32
07-05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40
07-06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	
조세, 재정, 보육·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46
07-07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60
07-08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 기업의 세부담과 소득을 중심으로 -	63
07-09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70
07-10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74
07-11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DIT를 중심으로	78
07-12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84
07-13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90
07-14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95
07-15 보건·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101
07-16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105
● 기타보고서	109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111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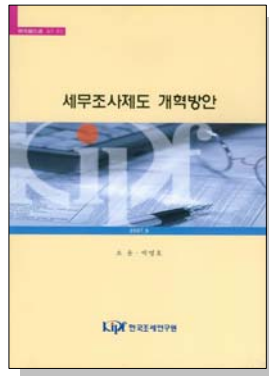
-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 115

- 세법 연구 123
 - 07-01 경매·공매제도 비교를 통한 채납조세 징수업무의 합리화 방안 125
 - 07-0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127
 - 07-03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129
 - 07-04 중소기업지원세제 관련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130
 - 07-05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132
 - 07-06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연구 133
 - 07-07 금융허브 국가들의 조세제도 135
 - 07-08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비교분석 연구 137
 - 07-09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실태분석 138
 - 07-10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139
 - 07-11 외국의 세무사제도 연구 140
 - 07-12 외국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중 최소부과원칙 운영 현황 142
 - 07-13 주요국의 환급가산금제도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 144
 - 07-14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 연구 146
 - 07-15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주요국의 사례 148
- 『재정포럼』 151
- 1993~2008 발간도서목록 175



연구보고서

www.kipf.re.kr



세무조사제도 개혁방안

- ◆ 오 윤 · 박명호
- ◆ 2007. 9.

조세법은 행정부를 통하여 집행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조세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해결된다. 세무행정은 행정부를 통한 조세법의 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법의 집행인 세무행정은 크게 보아 납세자에게 부과된 납세의무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지원기능과 개별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세법에 맞게 올바르게 확정·납부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징수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납세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하는 서비스지원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납세자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다면 세무조사의 필요성은 절감될 것이다. 다른 한편, 세무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면 성실납세가 정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지원기능과 조사기능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세무조사행정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절차를 시스템화·투명화·과학화하고 법을 원칙에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해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성실도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도입한 것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직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부문에서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기법 등 조사정책의 운영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진전을 보여 왔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세무조사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탈세 적발과 함께 간접적인 납세순응 제고 효과를 통해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세무조사행정 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외부의 독립적인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추진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무조사 운영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장에 미진한 점이 적지 않다. 납세자 권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세부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위임의 근거가 미약하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세무조사과정에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를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선 우리나라의 법제와 행정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세무조사 현황을 조사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들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세무조사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외환 위기 직후인 2000년대 초반에 지표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너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1990년대 말의 수준에는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5년도의 경우 모든 지표는 세무조사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여지는 충분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세무조사의 비율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즉, 주어진 인력과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무조사 포괄범위를 일정수준 향상시킴으로써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세무조사 협력비용의 개념이 과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세법령 해석지원 체계가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정립되어 있지 않다. 현행 제도 중 과세전적부심의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사사무대상규정상 납세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법규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외국의 법제와 행정현황을 살펴보면 영미법계 국가는 세무조사의 과학화에, 대륙법계는 세무조사절차의 법제화에 있어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영미법계 국가임에도 세무조사의 과학화에, 일본은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절차법제화에 괄목할 만한 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각 나라의 상황을 간략히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미국은 비록 불문법 국가이기는 하지만 조세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성문법적인 장치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이는 조세법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과 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의 절차가 세법에 비교적 소상히 규정되어 있다. 특기할 점은 임의추출(random sampling)을 통한 과학적인 조사대상자 선정에 매우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장기 전략적인 세무행정계획의 수립을 중요시하여 독립성을 가진 국세청 감독위원회가 그 분야에 있어 최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조세제도의 형성과 그 집행에 각 지방정부의 역할과 비중이 큰 편이다. 그리고 집행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중첩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각 지방 간 경제교류에 제약을 주어 왔기 때문에 일찍이 국가 전체적인 조세법의 적용이나 그 집행에 대한 통일적인 법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와 독일은 조세기본법, 프랑스는 조세절차법이 도입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독일, 프랑스(및 일본)에 공통적인 점은 임의추출 방법은 도입되어 있지 않고, 조사관서의 재량에 의한 선정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경우 신고성실도를 측정하기 위한 전산기법은 활용되고 있지만 이는 세무서 직원의 선별심사를 위한 사전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

독일은 소득과세에 있어 부과과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속확언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장래 경제활동의 확실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비록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든 신고서에 대해 조사(서면조사 포함)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포괄주의적인 소득 개념에 입각하여 개인에게도 순자산증가설적인 관점에서 추계하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러한 만큼 분쟁의 소지도 많아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협의과세제도나 대심적경정절차와 같은 분쟁을 대비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한편, 일본은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조세행정의 틀이 잡혀 있어 그와 같은 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입법보다는 정부의 행정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그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앞서 영국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였다. 영국은 불문법국가이다. 조세법에 있어서는 항구적인 효력을 갖는 법과 1년간 효력이 있는 연간 법이 중첩되어 각 법을 모두 읽어 보아야 실제적으로 개별사안에 적용될 법규정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영국에서는 일찍이 조세관리법(Taxes Management Act)이 조세법의 집행절차에 대해 규정하게 되었으며, 세무조사행정도 그에 따라 발달하게 되었다. 특기할 것은 영국은 1997년에 가서야 소득세에 있어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의 의미도 달라졌고 임의추출 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임의추출 방법은 미국에서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영국보다는 오히려 캐나다, 호주 및 아일랜드에서 더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영국이나 미국에서와 같은 임의추출에 의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다른 점은 매년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와 같이 개인소득금액을 조사함에 있어 순자산방법 및 은행예금방법에 의한 포괄주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의 국제청 감독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관리이사회가 구성된다.

호주는 부과과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과를 위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를 하는 즉시 부과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조사종결과정에서 협의를 중시하여 자세한 협의결정요령이 운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세무조사제도와 그 행정은 각 나라마다 역사적, 법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 있어서는 통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점점 더 과학의 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세무조사를 단순히 세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신고 성실도를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의 결정에 있어서뿐 아니라 공표 여부의 결정에도 기본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무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순응도 측정을 위한 임의추출 조사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납세협력비용을 계층화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또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관청의 과세자료의 수집 및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및 행정장치들이 보강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세무조사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사 종결과정에서 협의의 요소가 많이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적인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절차법적인 규정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조사의 개시와 종결 과정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법규적인 통제를 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미국, 프랑스 등에서 입증책임과 가산세에 있어서 도입되어 있는 구체적인 장치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 독립적 위원회가 국세행정 전반의 합리적 운영을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가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로서도 기능하기도 한다. 이는 사전적인 질의회신, 신청에 의한 사전조사 및 구속확언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복잡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호주, 미국의 경우 정부가 그 유형을 사전에 공표하기도 하며, 프랑스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에서 검증하는 제도를 두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및 외국의 법제와 운영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납세자 유형별 및 계층별로 차별화된 조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납세자 유형별·계층별로 각양각색의 납세순응 위험요소를 세밀히 관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차별화된 조사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탈루성향이 강한 계층이나 탈루규모가 큰 계층에 대해서는 조사의 포괄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소규모 법인보다는 대규모 법인에 대한 조사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사업자 조사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나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비용을 중산층 자영업자의 경우보다 높여야 한다. 한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전반적인 조사포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실지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화·서면 등 통신조사나 신고서상의 일부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 및 세무서 대면조사 같이 간편한 방식의 조사기법을 소규모 법인이나 저소득 자영업자 계층에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무작위 추출조사를 도입하여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시스템(Compliance Analysis Function System, 이하 'CAF')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통계분석에 기초한 조사대상자 선정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중인 CAF 시스템은 한정된 평가요소로 다양한 유형의 수많은 신고서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준칙(rule)을 지속적으로 갱신함으로써 CAF 시스템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CAF 시스템의 보완과 통계분석 선정방식 도입에 필수적인 일정규모 이상의 무작위추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무작위추출 조사의 적정규모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소한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세무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가산세의 차별화 및 중과, 금융실명거래 정상화, 금융거래자료 수집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주의 과세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접근 확대 및 벌금 강화는 납세자의 탈세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켜 조사의 효율성 제고 및 자발적인 납세순응 유도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세무조사운영의 정기적·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세목별로 비정기적이고 개략적인 조사운영방침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납세자의 유형 및 계층에 따른 탈세위험영역 및 요소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조사전략 및 조사운영방침을 제시한 연간보고서를 발간·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충분한 현황 파악 및 과학적 분석을 수반한 조사운영방침을 자세히 공개함으로써 국세청이 의도하고 있는 조사의 신뢰성 회복,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납세순응 제고 등과 같은 기대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확실성 제고를 통해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알기 쉬운 세법 만들기, 사전적인 해석제공 기능 확충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개별 세무조사과정에서 절차의 개선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 중 상당 부분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조사의 개념을 범정화하고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는 중복조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내실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세무조사대상자 요건은 실제적인 내용을 범규화하는 것보다는 선정절차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조사 통지서는 세무조사를 위해 사전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조사의 비밀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규정과 법제화가 필요하다. 세무조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입증책임과 연계 그리고 납세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배상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종결에 대해서는 종결합의를 체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역시 중복조사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내실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셋째, 범칙조사의 요건과 절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안적인 세무조사제도로써 사전조사 또는 advance ruling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분쟁방지를 위해 협의에 의한 조사종결제도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실질적인 권리구제장치가 되도록 원칙적으로 구두진술(청문, hearing)하도록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납세자보호담당관직에 대한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업무영역도 납세자보호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납세협력비용의 추계와 그의 절감을 위한 정책개발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국세청의 다른 계선조직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주고 인사채용에 있어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제도개혁 방안은 부문별로 흩어져 관리되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는 지표에 의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외부인사를 포함한 독립된 감독위원회가 신설되어 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기구는 국세행정조직의 개별 관리자의 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거 실적 그리고 다른 나라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지표에 의하여 국세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세무행정 지표로는 조세격차(tax gap), 납세순응도, 납세협력비용 등이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납세협력비용과 조세격차의 과학적인 계측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 목 차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

1. 세무조사의 개념과 정의
 2. 최근 세무조사제도의 변화
 3. 현행 세무조사제도
 4. 실제 운영상황 분석
-

Ⅲ. 외국의 세무조사제도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5. 캐나다
6. 호주
7. 요약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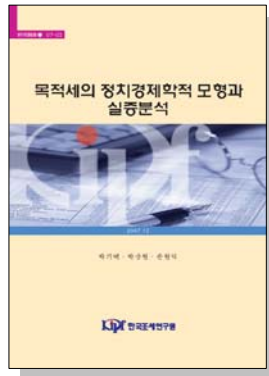
Ⅳ. 세무조사제도 개혁방안

1.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2. 납세자 권익보호
3. 전략적 접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 ◆ 박기백 · 박상원 · 손원익
- ◆ 2007. 12

본 연구는 교통, 환경, 교육,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목적세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목적세와 관련한 논란이 많다는 점에 입각하여 목적세 관련 현황, 기존 이론 및 목적세에 대한 새로운 해석, 논란과 관련된 실증분석, 정책 과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먼저 현황에서는 목적세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였다. 미국 감사원(GAO, 1990)이 '법규에 의해 특정한 지출에 사용하도록 정해진 세입'으로 목적세를 정의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자도 부담금을 목적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목적세 규모를 살펴보면 2006년 기준으로 18.9조원이 세금이며, 사회보험을 제외한 목적세 성격의 부담금을 합하는 경우 그 규모는 29.2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금 등 사회보험 성격의 목적세를 합하면 전체 목적세의 규모는 85.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통합재정 세입 대비 40.8%에 이른다.

이론모형에서는 먼저 목적세입(주로 부담금)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재화가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을 가진 사적 재화(private good)일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좁은 의미의 목적세는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치경제적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투표나 여론을 통해 표출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그 분야가 예산배분 시 차지하는 중요도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목적세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지지가 높은 교육, 환경, 도로에 목적세가 주로 사용된다고 보고 있다.

실증분석에서 추세치를 포함한 단위근 검정 결과를 보면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의 경우 모두 목적세가 도입됨으로써 세수 비중에 있어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목적세를 도입하는 것이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Chow Test의 결과에서도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도입으로 전체 세수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목적세가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세 모두 지출 증가와의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적세가 지출의 안정성을 제고하였는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교육분야에 비해 농어촌이나 수송 관련 지출의 변동성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목적세는 지출의 해당 분야의 지출 증대보다는 전체 세수를 확대하거나 해당 분야의 지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조세(부담금)부문은 산업자원분야, 건설·교통분야, 환경분야에 대하여 지출과의 상관관계 및 부담금을 통한 재원조달의 적절성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각 분야별 부담금과 해당분야 지출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환경분야와 건설·교통분야의 경우 부담금의 운용으로 관련분야의 지출이 확대되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산업자원분야의 경우 그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담금의 도입이 관련분야 지출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부담금이 관련분야 지출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원조달의 수월성 때문에 부담금이 운용되었는가에 대한 검증 결과 모든 분야에서 그와 같은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즉, 분야 전체를 고려할 때 일반회계에서 조달되어야 할 재원이 부담금이라는 수단으로 조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각 분

야가 포함하고 있는 부담금의 수가 많아서 각 개별 부담금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개별 부담금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수행되었다.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세는 존치하되 세입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세를 비롯한 유류에 대한 과세는 일반과세(특별소비세), 환경세, 교통세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과세의 재원은 철도, 대중교통, 항만, 공항 등의 공공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반면 일반과세에 추가되는 교통세는 무상도로의 확충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목적세로 존재할 필요성은 없다. 다만 농어촌특별세의 폐지가 어렵다면 복잡한 세입 구조를 단순화하여 국민이 혜택과 부담을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액,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제외하는 것이 우선적인 간소화 대상이다. 혜택 또는 지출 용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에서도 FTA 지원 등 특정 지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부담금의 경우를 보면 석유수입·판매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기여금의 경우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모두 부담금으로서의 적합성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의 성격을 크게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조세로의 전환 등 다른 정책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은 사업비가 전체 지출의 6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여유자금 운용에 지출되고 있어 부과요율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목 차

I. 서 론

II. 현 황

1. 개 요

2. 우리나라의 현황

3. 미국 사례

Ⅲ. 이론 분석

1. 기존 연구
2. 새로운 이해
3. 소 결

Ⅳ. 실증분석

1. 조세부문
2. 비조세(부담금) 부문

Ⅴ. 정책 과제

1. 세금 분야
2. 비조세(부담금)

Ⅵ.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출산을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 ◆ 우석진 · 민희철
- ◆ 2007. 12.

본 연구는 장기적 인적자본의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의 2차 연도 과제이다. 1차연도 과제에서는 한국 여성의 출산율을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분석은 소득수준, 배우자의 소득, 여성의 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변화, 여성임금의 증가, 여성의 혼인연령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었다. 가치관의 변화나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은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한 관심과 조명을 받았으나, 상대적으로 자료의 부재 혹은 한국 경제학자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였던 부분을 배우려는 시도였다. 1차연도 연구를 통하여 배우자의 소득과 여성의 임금이 여성의 출산 결정과 출산 간격 결정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추가적인 노동공급 없이는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을 보였다.

2차연도 연구과제는 1차연도 연구과제에서 도출된 경제적 요인과 여성의 출산 결정과의 상관관계를 근간으로 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출산율 제고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정책이 한국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의 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 여성의 일련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동적 구조모형(dynamic structural model)을 발전시킨 후,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KLIPS)를 이용하여 모형의 구조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구조모수를 이용하여, 정부가 출산을 제고정책을 통해서 여성의 예산제약을 변화시켰을 경우,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의 결정이 단기 및 장기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 experiments)을 통해서 추정하였다.

실험 결과, 무급 혹은 유급휴직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정책에 비해 크지 않고 오히려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출산과 노동공급을 동시에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되는 예상 재정에 비해서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전지출이 미치는 효과는 그 지원 액수가 큰만큼 다른 정책들보다 효과의 크기가 큰 편이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지원했을 때에는 노동공급을 장기적으로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지원을 취업모에게만 한정한다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60~80% 감소시키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과 인적자본 축적을 제고하여 재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인 정책은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는 출산율 제고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차등보육료를 크게 확대하는 제도와 기존의 차등보육료 제도를 유지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형태의 제도 중 출산율 특히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대해 차등보육료를 크게 확대하는 제도가 더 영향을 준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를 살펴보면, 먼저 제II장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과 출산장려정책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았다. 출산율의 감소는 근로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1인당 소득의 성장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고령층 인구 대비 근로인구의 비중을 감소시켜서 연금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사회보장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

으며, 또한 저축률의 감소로 경제의 투자규모와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출산장려정책이 도입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1960년대 신가계경제학(New Home Economics)으로 불리는 연구에 따라 자녀의 출산을 부모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간주되고,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가구 소득 등이 출산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연구들이 이후 정책과 출산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의 핵심적인 기초를 제공하였다.

제III장에서는 OECD국가들의 출산장려정책을 항목별로 살펴보고, 그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OECD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조세 및 지원금, 보육서비스 제공, 양육 휴가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지원의 범위 및 규모는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Gauthier(2007), Sleebos(2003) 등 최근의 서베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대다수의 연구에서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의 크기가 작은 경우도 있었으며, 연구에 따라서 출산율 증가의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 효과에 대한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제IV장에서는 여성의 출산 결정을 동학 구조모형(dynamic structural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 문헌들을 정리하였다. 동학구조모형은 정학모형과 비교해 볼 때, 시간프로파일(time profile)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출산 결정에 수반되는 동학적 함의(dynamic implications)를 분석 가능하게 해준다. 여성의 출산 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 중에서 본 보고서에서 발전시킨 모형과 관계 있는 주요 논문 세 편을 정리하였다.

먼저 Wolpin(1984)는 출산 결정을 동적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188개의 말레이시아의 샘플을 이용하여, 구조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및 분석하였는데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자녀 수가 주는 한계효용은 자녀 수에 대해서는 증가하지만 그 정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소비와 자녀 수는 조대체제(gross substitutes)관계에 있다. 셋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이의 한계효용은 낮은 경향이 있다. 넷째, 남편의 소득은 자녀 수에 양(+)의 효과를 미친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가정의 경우 출산을 늦추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는 Heckman과 Willis(1976)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발견들을 경제학적 용어로 정리해보면, 출산 결정은 다소 작은 양(+)의 소득효과와 큰 음(-)의 교육효과가 있다. 자녀 사망 시 추가적인 출산 결정과 관련해서는 다소 작은 대체(replacement)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Wolpin의 연구가 선택변수를 출산에 대한 통제를 직접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로 모형화하였다면, Hotz와 Miller(1989, 1993)은 출산을 위한 노력을 통제변수로 함으로써 출산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모형에 포함시켰다는 데에 그 공헌이 있다. 더 나아가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자녀 수만 효용함수에 포함시켰지만, Hotz와 Miller의 일련의 연구는 자녀의 연령구조도 모형에 포함시켜 이후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도록 함으로써 문헌을 한층 발전시켰다.

Francesconi(2002)의 연구는 원래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노동시장 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 출산보다는 노동공급의 측면이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공급과 출산을 동시에 동적 상황하에서 모형화함으로써 출산과 노동공급 결정의 상호작용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발전시킨 모형의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 분석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발견을 하였다. 첫째, 여성이 전일제 부문에 노동공급을 하는 이유는 경력 및 학력으로 대표되는 인적자본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시간제 부문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시간제 부문에 대한 노동공급의 지속성이 떨어진다. 둘째, 전일제 부문과 시간제 부문의 인적자본은 서로 대체성이 낮다. 셋째,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한계효용이 낮다. Francesconi(2002)의 연구의 큰 약점은 기혼자나 결혼경력(ever married)이 있는 여성들만 분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결혼에 대한 결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결혼을 한 여성이 자녀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을 수 있다는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의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제V장은 기존문헌과 1차연도 과제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패턴을 설명해줄 수 있는 동적 구조모형을 발전시켰다. 가임기의 여성이 생애주기 효용함수(life-time utility)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련의 결혼, 노동공급, 출산 결정을 한다. 기존문헌에 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점은, 모형 내에 결혼 결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실증분석에서도 미혼 여성을 샘플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문헌이 가지고 있던 표본선택의 문제를 최소화시켰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서 정부의 출산율 제고정책 수단, 예를 들면 자녀 보육비 지원, 이전지출 등을 예산제약식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서 정부의 정책 실험이 유의미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VI장에서는 제V장에서 발전시킨 모형의 구조모수(structural parameters)를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여, 먼저 1단계에서는 여성과 배우자의 임금 및 소득 방정식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임금 및 소득 방정식을 이용하여 2단계에서는 여성의 효용함수의 모수들을 추정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모형에서 했던 가정들 때문에 고정비용들이 과대 추정되었기는 하지만, 대체로 추정된 모수들은 통상 기대되는 부호와 크기를 가졌다.

제VII장에서는 제VI장에서 추정된 구조모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s)을 실시하였다.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중요한 정책 실험을 통해 한국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및 결혼의 결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학력의 차이가 가져오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여성노동자들 간의 학력 차이가 장기적으로 여성 출산과 노동시장, 결혼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화하였다. 고졸 여성은 중졸 여성보다 2.19%, 대졸 여성은 5.46% 완결출산율이 높다. 노동시장 참가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학력에 따른 차이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었다. 결혼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저학력자가 좀 더 일찍 결혼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차이는 감소하여 학력이 결혼에 미치는 효과는 많이 감소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결혼 연령의 지연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결혼이 1년 지연되면 기존 출산패턴과 비교하여 약 6%의 출산 자녀 수의 감소가 예상된다. 노동시장 참가율은 단기적으로는 상승하지만 이후의 급격한 결혼의 증가로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인적자본의 축적 속도는 결혼 지연으로 인한 초기의 차이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었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취업모에 대해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보육비 지원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약 2% 정도이고 결혼은 약 0.04%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상대적으로 효과는 작다. 오히려 효과를 미치는 지점은 노동공급과 인적자본의 축적이었다. 노동공급은 3% 증가시키고 인적자본은 0.18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네 번째 실험은 이전지출에 관한 것이다. 이전지출은 현금지원이기 때문에 노동공급에 있어서 소득효과가 있어 노동공급 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모든 자녀가 있는 가구에 현금지원을 할 경우 출산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반면에 여성의 노동공급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을 취업모에게 한정하는 경우 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60~70% 정도 감소시키는 하지만 여성의 노동공급이 10만원 증가당 3.5~6%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재정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VIII장에서는 제VII장에서 다루었던 개별 정책이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으로 구현될 때의 모습, 즉 정책 혼합(policy mix)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거기에 비슷한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서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비용효율적인(cost effective) 정책을 식별해 내려고 하였다.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는 출산율 제고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현재의 차등보육료를 크게 확대하는 제도와 기존의 차등보육료제도를 유지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형태의 정책 중 출산과 특히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대해 차등보육료를 크게 확대하는 제도가 비용효율적인 면에서 우월한 정책이라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종합적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출산을 제고정책에 동원될 수 있는 재정이 유한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본적인 출산정책은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게 지원을 하되 취업모에 대한 지원을 보완책으로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한국 여성이 출산과 노동을 병행할 수 있고, 그 결과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II. 출산율 하락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2.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도입의 이론적 배경

III. OECD국가들의 출산장려정책

1. 출산장려정책 항목별 분석
2.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IV. 선행연구

1. Wolpin(1984)
2. Hotz & Miller(1989, 1993)
3. Francesconi(2002)

V. 모형의 이론적 개관

1. 모형의 가정
 2. 모형설정
 3. 상태변수들의 진화(Law of motion)
 4. 반복적인 표현(recursive representation)
 5. 여성의 최적 의사결정
-

6.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논의

VI. 실증분석

1. 자 료
2. 식별전략(Identification strategy)
3. 계량경제모형
4. 추정 알고리즘: inner loop와 outer loop
5. 추정결과

VII.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추정

1.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 Experiments)
2. 출산장려정책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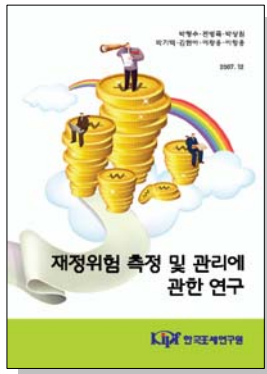
VIII. 출산율 제고정책의 분석

1. 보육지원정책
2. 아동수당 도입

IX.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 박형수 · 박상원 · 박기백 · 김현아 · 이창용 · 이항용
- ◆ 2007. 12

재정위험이란 “정부가 재정정책의 목적을 일부 또는 전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Hemming and Petrie, 2000)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정책 당국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방안을 거시재정 측면에서의 재정총량에 대한 재정위험과 국가재정을 구성하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분야별 재정위험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거시재정 측면에서의 재정총량에 대한 재정위험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Hemming & Petrie(2000)이 제시한 ① 현 재정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 ② 단기적인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재정의 민감도 ③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④ 재정을 약화시키는 구조적·제도적 요인을 채택하였다.

제Ⅲ장에서 이러한 4가지 측면에서 우리 재정의 거시재정 측면에서의 재정위험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및 중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본격화되는 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 유지 및 세출 증가 관리,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담보되지 않는 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재정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세입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여 지금과 같은 비교적 양호한 재정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구고령화 그 자체만의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2050년까지 GDP 대비 9%가 넘는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조세부담률이 현재 수준으로 고정될 경우 2050년 관리대상수지 및 국가채무 규모가 GDP 대비 -6% 및 10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조세부담률이 과거 30년 동안 증가한 것처럼 향후 40여년 동안 상승한다면 관리대상수지 및 국가채무 규모가 GDP 대비 현재 EU국가들의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상한인 GDP 대비 3% 및 60% 수준으로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입기반 유지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의 적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우리 재정의 중장기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인구고령화 그 자체에 의한 효과만을 포함시키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복지제도가 도입되고 기존 복지 프로그램이 확대될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아 추정치의 하한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규모 급증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건강보험재정의 법적 분담장치 등에 의해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제한적이어서 우리 재정이 다른 EU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의료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부담비율이 현재보다 더 높아져 국가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위험이 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될 남북경협 및 막대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비용 또한 우리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현재 제도화된 재정규율만으로는 이러한 장기적인 재정 악화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래의 재정 재앙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재정당국 및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를 담보하는 보다 탄력적

인 형태의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환경을 정비하고 복지 및 지방이전채 원 등 지출 증가에 대한 시스템적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당국의 보다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및 재정성과 평가 및 사업관리 내실화, 재정의 투명성 및 외부 견제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총량 및 각 분야별 재정위험 등 전반적인 재정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정위험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재정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하기 위한 재정위험백서(가칭) 등 정례화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재정의 총량적 측면에서의 위험과는 별개로 국가재정을 구성하는 개별 분야별로 재정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데, 위험의 개념 및 측정, 관리방법이 개별 분야별로 매우 상이하다. 분야별 재정위험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채관리, 지방정부 및 공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공적연금 등 암묵적 채무, 정부의 신용보증·예금보험·수출보험, 민자투자에 대한 수익보장 등 인센티브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IV장부터 제VII장에 걸쳐 Polackova(1998)의 재정위험 분류 방법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체계적으로 재정위험을 파악하여 그 위험 정도를 측정하였다.

Polackova(1998)의 재정위험 분류 방법에 따른 연구범위

	직접채무	우발채무
명시적 채무	<확정채무> - 국가채무 : III장(재정총량), VI장(지방정부), VII장(정부부채)	- 보증채무 : V장 4절(보증채무)
	<미확정채무>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관련 부채 : IV장 1절(사회보장성기금) - 기타 : V장 3절(민자투자 : BTL)	- 신용보증 : V장 2절(정부신용보증) - 기타 : V장 3절(민자투자 : BTO)
암묵적 채무	-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관련 부채 : IV장 1절(사회보장성기금)	- 공기업 채무 : V장 1절(정부출자·투자기관) - 중앙은행 채무 : V장 4절(통안증권) - 공적자금 : V장 3절(예금보험) - 남북경협 및 통일비용 : III장 4절(남북경협 및 통일비용)

주: 외환위기 직후의 공적자금 투입은 우발적/암묵적 채무 → 우발적/명시적 채무(보증채무) → 직접적/명시적 채무(상환계획에 따른 국채전환)으로 과정을 거침.

제IV장에서는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을 구성하는 회계 및 기금 중에서 재정 위험의 성격이 일반적인 재정과는 다소 상이한 3개 공적연금(군인연금 제외),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3개 기타 사회보장성기금 및 3개 사업성기금에 대해 각각 적절한 재정위험의 개념 설정 및 이에 입각한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관리방안을 살펴보았다.

공적연금은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현 가입자에 대해 약속한 급여 중 기여금 등으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의미하는 ‘미적립부채’로 재정위험을 측정하였다. 추정된 미적립부채 규모가 국민연금의 경우 GDP 대비 38.6%(2006년), 공무원연금 21.2%(2006년), 사학연금 3.9%(2006년)에 달해 모두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규모는 기여-급여구조의 개혁이 없는 한 2050년 GDP의 98.9%, 30.3%, 5.1%로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공적연금의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기여율 인상-급여 인하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들은 공적연금과는 달리 장기간에 분포하는 약속된 급여가 거의 없고 단기간의 재정수지 적자는 기여금 요율 변경을 통해 조정되므로 미래의 지출규모 자체를 재정위험으로 파악하였다. 즉, 미래 지출규모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 혹은 조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재정위험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지출규모는 2008년 GDP 대비 각각 2.5%, 0.3%, 0.4%에서 2050년에는 6.8%, 0.5%, 0.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동 기금들의 재정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금의 공적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각 위험에 대한 개인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역할을 최소한의 필수서비스 제공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각 제도의 운영효율화를 통해서도 지출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성기금은 자율성, 신축성, 회계의 독립성, 재량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회계보다 재정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다. 먼저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현재 재정상황은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저리의 장기 채권을 강매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지 않고,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에서는 순수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출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명확히하여 신중한 재정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규모가 크면서도 자체 재원이 없이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대표적 기금이다. 현재 사업규모가 유지된다는 보수적인 가정하에서 연간 5천억~6천여 억원의 일반재정 투여가 예상되는데,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큰 위험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향후 통일비용을 고민해야 하는바, 통일은 우리나라 재정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통일 재원 규모, 조달 방법, 비용분담에 대해서 전체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중산기금은 기본적으로 재량적 사업이 주된 비중을 차지하므로 재정위험이 높지 않다. 중산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은 강제성이 없어 구매 저항은 없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재원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민간차입금 규모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용자사업의 이차보전방식에서의 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V장에서는 정부의 재정위험을 야기하는 기타 분야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재정부담과 재정위험을 구분하여 재정부담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았다. 반면 재정위험은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의미한다.

먼저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의 경우 재정부담은 전년도 부채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부담으로 2006년 기준 약 5.1조원이다. 200%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 재정위험은 2006년 약 11.7조원이다. 다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전체 재정 부담 및 위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신도시 개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등이 원인이므로 향후 관련 투자가 안정화되면 공기업 관련 재정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적 신용보증의 경우 소요 비용이 1조 9천억원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 정부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거의 없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현재의 손실 규모보다 2배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약 4조 7천억원 수준의 재정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파산 등으로 인한 재정위험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자산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자산 평가 및 재무 안정성을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보증공급 증가가 재정부담을 증대시키는 핵심 요인이므로 이를 축소하기 위하여 보증심사의 강화, 목표손실률 적용, 부실대출에 비례한 금융기관 출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민자투자사업, 예금보험, 정부보증, 외평기금, 통안증권 등의 재정부담 및 위험은 간략히 살펴보고 있는 수준이므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구조적으로 높은 이전재원 비중을 통한 세출 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정관리제도 또한 세입 내 세출의 예산원칙, 중앙정부의 과세권 및 세출 제한(투융자심사 등),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규제 등으로 엄격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위험 정도는 높지 않다. 따라서 제VI장의 지방정부 재정위험 분석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지방정부 세원 하락과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 증가와 같은 지방정부 지출패턴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정부간 재정관계 관점에 중점을 두었다.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어떻게 중앙과 지방이 나누느냐가 관건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정부단계별로 상충되는 견해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방재정 관리방안을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정확한 재정수요 파악을 위한 DB 구축, 세출사무 부담완화를 통한 재정위험 부담의 구체화, 정부간 재정관리효과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거시경제적 충격완화·부담완화를 위한 재정위기 중심의 구체적인 점검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이후 국가부채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가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제VII장에서는 국가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재정부 국고국이 담당하고 있는 국채관리 기능을 선진국 수준의 PDMO 기능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일선부서, 중간부서, 후방

부서의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인 운용시스템인 DRMS(Distributed Resource Management Systems)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종 부채발행 전략에 따른 부채상환비용과 위험을 분석할 수 있으며, 분석내용은 정기적으로 발행하게 될 국가부채관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부채관리 보고서는 국가부채관리 정책의 목적 및 업무내역뿐 아니라 국가부채의 규모와 구성, 정부의 자금조달계획, 만기별 국채발행계획, 현금관리정책, 외환보유고 관리, 국가 보증채 및 대출 포트폴리오 및 현황, 중앙정부의 대차대조표 분석 등을 포괄하여 발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부채 및 자산의 시장가치, 단기부채비율, 듀레이션, 평균만기, 회전율, 변동금리부채비율, 항목별 이자비용 등에 관한 세부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전반적 위험관리 체계와 각 위험 유형(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영위험)에 대한 현황 및 관리체계, 시뮬레이션 모형의 소개 및 모형에 의한 차입비용 및 위험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 등도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 목 차

I. 서 론

II. 재정위험의 이론적 고찰

1. 재정위험의 정의 및 측정
2. 뉴질랜드의 재정위험 관리
3. EU의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III. 거시재정 측면에서의 재정위험

1. 재정상황에 대한 판단
2. 중단기적인 재정의 민감도
3.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4. 재정을 약화시키는 구조적·제도적 요인
5. 소결

IV. 중앙정부의 재정위험

1. 공적연금의 재정위험
2. 기타 사회보장성기금의 재정위험
3. 사업성기금의 재정위험
4. 소결

V. 기타 재정활동의 재정위험

1. 정부출자·투자기관
2. 정부 신용보증
3. 민자투자 및 예금보험
4. 보증채무 및 통안증권
5. 소결

VI. 지방정부의 재정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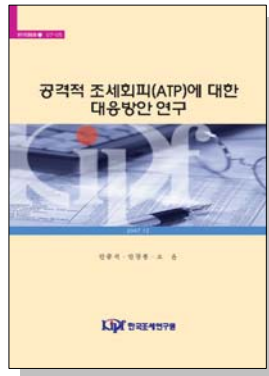
1. 지방정부 재정위험 분석의 필요성
2. 선행연구 분석
3. 우리나라 지방정부 구조 및 재정위험제도 분석
4. 재정위험 측정
5. 재정수요의 내용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측정
6.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리 방향
7. 소결

VII. 국가부채의 재정위험

1. 국가부채관리의 필요성
2. 국가부채의 위험관리
3. 국가부채관리 시스템의 요건과 기능
4. Public Debt Management Office(PDMO)의 설립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 안종석 · 안경봉 · 오 윤
- ◆ 2007. 12

조세회피 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조세회피 거래의 발생 및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에 실질과세 규정이 있으나, 법원은 경제적 실질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법적 실질’이라는 소극적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2007년 세법개정안에 단계거래의 원칙이 포함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른 선진국에서 도입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같은 혐의거래 정보의 조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며, 대량 판매형 투자상품에 대한 예규제도도 없고, 조세회피 조장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 조세회피 거래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거래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경쟁적 경제환경, 통신기술 및 금융기법의 발달, 세계화의 진전 등 최근의 조세회피 증가요인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의 발생 건수나 규모, 기법 등에 있어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회피 확산요인들은 우리나라도 조세회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빠른 시

일 내에 조세회피가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엔화스왑상품의 판매 등 최근에 드러난 사례들이 부분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조세회피는 법률의 허점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법률을 제정할 때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정책의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조세를 회피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며, 조세체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이나 부유한 자들, 국제적인 재정거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들이 공격적 조세회피를 통해서 세부담을 회피하는 반면 소규모기업이나 평범한 납세자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조세회피는 형평성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조세회피의 억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경제활동의 세계화, 금융자유화, 각종 규제완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절세전략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조세회피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 경우 과세기반 잠식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조세회피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회피는 전염성이 강하여 발생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나,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그 후에는 과세당국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아직은 초기라고 할 수 있는 현 단계에서 조세회피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조세회피 억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조세제도를 단순화하여 법·규정의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 외에 조세회피 거래 규제제도로 ①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AAR), ② 혐의거래 신고제도, ③ 투자상품 예규제도, ④ 조세회피 거래 조장자에 대한 제재를 들 수 있다. 선진국들의 조세회피 거래 규제제도의 도입 현황을 보면, 미국은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조세회피 거래 조장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도입하였으며 GAAR은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법으로 실질과세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영국은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갖추었으나 투자상품 예

규제도와 조세회피 거래 조장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도입하지 않았다. GAAR은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판례법상 실질과세를 위한 단계거래의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되었으며 점차 실질과세의 적용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성문화된 GAAR을 갖고 있으며, 캐나다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혐의거래 신고제도가 있고 호주에서는 투자상품 예규제도가 독특한 제도로서 자리잡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는 모두 조세회피 거래 조장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갖추고 있다.

국가마다 도입한 제도의 내용은 다르지만 각 제도는 나름대로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와 동시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억제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제도가 모두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제도의 특징과 역할을 살펴보고 각 제도의 도입 필요성, 도입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네 가지 제도 중 도입 타당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GAAR의 경우 구체적 조문안을 제시하였으며, 아직 국내에서 생소한 다른 세 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각 제도의 특징과 조세회피 거래 규제에 있어 각 제도의 역할을 보면, GAAR은 조세회피 거래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되므로 조세회피 거래 규제제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시장에서 대량 판매되는 투자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장자가 예규를 신청하여 투자상품 안내서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직접 적용대상자는 조장자이나 시장형 상품 투자자의 조세회피 수요 및 공급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규 질의·응답 과정에서 거래에 대한 정보가 조기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맞춤형 조세회피 상품의 공급 및 수요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이다. 조장자가 조세회피 혐의거래를 등록해야 하므로 조장자의 조세회피 상품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납세

자에게도 신고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고를 통해 관련 거래 정보를 조기에 입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조장자에 대한 제재는 조세회피 거래 공급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이다. 조세회피 거래가 대체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조장자들에 의해 시작된다는 점에서 볼 때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규제도 조세전문가들의 조세회피 조장 행위를 억제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장 먼저 조세회피의 억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로서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조세회피의 억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조세수입의 확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조세의 형평성 제고, 법질서 확립, 조세회피의 부정적 외부효과 차단 등 조세회피가 유발하는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수반되는 비용을 보면 과세관청의 관점에서 조세회피 혐의거래의 등록, 예규 발행 등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며, 조장자와 납세자도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개별 제도별로 보면 GAAR은 특별히 행정적인 비용을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장자 제재규정도 조장자에게 불안감을 주기는 하지만 그 규정의 시행에 있어 특별한 비용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투자상품 예규제도의 경우 상품 판매자가 상품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정리하여 질의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그 대가로 조세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이익도 있다. 한편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조장자 및 납세자 개개인으로서 특별한 혜택이 없음에도 등록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세무당국에 자세한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장자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제도의 시행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강력한 가산세제도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영국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가산세를 강화하는 등 엄격한 시행을 위한 제도 개편을 계속하고 있다.

◆ 목 차

I. 서 론

II. ATP의 개념, 사례 및 사회·경제적 영향

1. ATP의 개념
2. ATP의 증가 및 확산 원인 분석
3. 조세회피의 경제적 영향

III. 최근의 조세회피 사례

1. 엔화스왑 예금
2. 룬스타 등 휴면법인을 통한 등록세 증가 회피
3. 물품거래를 가장한 차입거래
4. 미국의 엔론 사례
5. 조세회피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IV. 주요국의 조세회피 거래 규제제도

1.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2. 과세절차적 조세회피방지규정
3. ATP 조장자에 대한 제재
4. 주요국의 조세회피 거래 규제제도 요약

V.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현황

1.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여러 유형
2. 실체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
3. 절차적인 조세회피방지제도

VI. ATP 확산에 대한 대응방향

1. 조세회피 규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2. 네 가지 규제제도의 특징 및 역할
 3.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도입방안
-

4. 투자상품 예규제도 도입방안
5.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도입방안
6. 조세회피 거래 조장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7. 현행 절차 규정의 개선
8. 개편방안 요약

참고문헌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조세, 재정, 보육·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 ◆ 민희철 · 우석진 · 김현숙 ·
김혜원 · 류덕현 · 옥우석
- ◆ 2007. 12

본 연구는 잠재성장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가족정책 입안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 학계 전문가들의 협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족정책(family policy 혹은 family friendly policy)이라는 용어는 OECD국가들 사이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용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한 용어이며 국내에서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 정책수단 등에 대해 다루어진 보고서는 아직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족정책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서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 관련부처 정책의 평가, 정책 가상실험을 위한 구조모형의 구축과 가상실험, 가족정책수단의 개발 및 그 효과분석, 가족정책수단이 잠재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가족정책을 자녀를 둔 일반가정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여 가정 내 구성원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 가사,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현황과 여성노동 공급에 대해 분석하고 여성이 직장가정을 양립하도록 도와주어 출산율과 여성노동 공급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보육산업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는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산업화와 가족계획사업의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1983년 2.08명으로 인구대체 수준(2.1명)이하에 머물렀고, 1985년 이후 약 10여 년간은 1.6~1.7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출산율은 이상변동을 하기 시작하여 1998년 이후 1.5명 이하로 급락하여 2005년에는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는 1.13명으로 약간 반등하였고 2007년 잠정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1.25명까지 반등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효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구직기간 1주 기준)은 54.8%이며 고용률은 53.1%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의 경우 2006년 기준 OECD 평균인 60.8%와 비교할 때 6%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고용률은 3.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해 와서 1986년 45.9%와 비교할 때 2006년은 54.8%로 8.9%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증가추세는 세계적으로 볼 때 그리 빠른 속도는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장애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혼외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북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두 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도 가능하므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에 모두 도움이 되는 가족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본 연구의 핵심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가장 급속하게 재원을 확대해가고 있는 영유아 보육 관련 현황을 살펴보았다.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률을 살펴보면, 영아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전체 만 0~2세 아동을 기준으로 할 경우 26%에 달하며 만 3~5세 사이의 유아의 경우에는 73%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영아의 시설 이용률

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만 0세의 경우, 시설 이용률은 2004년 7%에서 2006년 10%로 증가하였고 만 1세의 경우에는 18.7%에서 23%로 증가하여, 전체 영아의 시설 이용률은 2년 사이에 21%에서 26%로 5%포인트 증가하였다. 만 3~5세의 유아의 경우에도 2004년 68.6%에서 2006년 73%로 증가하여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보육서비스 이용률의 증가와 더불어 보육서비스 공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나 사립유치원 이용 아동의 보육료 및 수업료 부모부담분 경감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Ⅲ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가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정책수단을 살펴보고 정책 간 조화와 효과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 정책은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의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임신과 관련한 지원정책으로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정난관 복원수술 보험급여, 산전검사 보험급여 등이 있다.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2000년 기준 약 140만쌍, 기혼여성의 불임률이 13.5%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평균 회당 300만원인 시험관아기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신까지 3~4회 소요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한다.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정책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2인 가족 기준 435만원)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법적인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에 대해서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1인당 150만원씩(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1회에 255만원) 최대 2회를 지원하고 있다. 2004년 7월부터는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사람이 자녀를 더 가지고자 하여 복원수술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자녀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자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해오던 보험급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약 200여만원이 소요되는 수술비를 부담하지 않고 100만원 정도의 총 진료비 중 일부만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모든 임

신부의 혈액화학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간염검사, 풍진검사, 선천성 이상선별검사 등 산전검사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출산과 관련한 지원에는 해산급여 지원, 긴급복지지원 해산비 지원,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출산할 경우에는 50만원이 지급되며, 위기 사유로 인해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출산할 경우에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연분만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기본입원료, 분만료, 신생아 관리, 식대 등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4인 가족기준 212만원)인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을 통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주당 6일, 2주간 파견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와 관련한 사항은 신생아, 영유아 및 입양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천성 대사이상질환은 신생아 시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성장 및 발달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후에는 치료를 하여도 정상아로 회복하기 어려워 평생 정신지체 및 발육장애 등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2006년부터는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등 6종의 검사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 기준 731만원)인 가정의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에게는 특수조제분유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없으면,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집중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출생아 중 미숙아의 발생률은 4.2%, 선천성 이상아의 발생률은 1.8% 정도인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4인 기준 475만원)인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미숙아의 경우 체중에 따라서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되며,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입원할 경우 기본입원료, 식대 등 본인부담 진료비가 면제되며, 영유아의 성장 발달 영역을 무료로 진단, 평가하고 치료와 연계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입양장 애아동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연간 252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농림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핵심적인 정부정책은 보조금 지원과 국공립시설의 운영이다. 보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차등보육료,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만 5세 무상보육료이고 그 외에 입양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둘째아 이상에 대한 보육료 지급 등이 있다. 최근 들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정액으로 제공되는 영아기본보조금도 영아의 시설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점점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현재의 10% 내외에서 30%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시설에는 기본보조금을 도입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국공립의 위상과 비중을 높여 공보육을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입장이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생활 양립 정책은 크게 모성보호 제도와 육아지원정책 그리고 기업 수준에서의 일-가정생활 양립조치로 구성된다. 모성보호란 여성의 생리·임신·출산 및 육아 등 모성기능에 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신부나 기혼여성은 물론 장래의 임신부인 미혼여성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모성보호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휴가 보장, 근로시간 및 휴일·야간·연장근로 제한, 여성 사용금지 직종 지정 및 갱내 근로 금지, 생리휴가 보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육아지원정책은 육아휴직제도와 보육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 수준에서의 일-가정생활 양립조치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도나 선택적 근무시간제도 등의 유연한 근무제도를 포함한 기업의 지원조치들로 구성되는데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내의 몇 개 조항만이 이러한 조치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정부정책은 부처 간 정책 중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정책은 너무 예산이 적은 반면 항목은 많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며 정책목표가 상호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여 이에 대한 조

화와 부처 간 정책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IV장에서는 OECD 각국의 가족정책의 현황 및 효과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우선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가족수당(AF), 주거보조금(allocations logement), 가족보충금(CF), 가족부양수당(ASF), 취학수당(ARS) 등과 더불어 최저생계급여(minima sociaux) 중 홀부모수당(API)와 최저생계수당(RMI)과 세제유인과 관련해서는 소득세 공제와 취업급여(PPE) 및 주민세(taxe d'habitation)가 존재한다. 프랑스 가족정책의 특징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자녀 수가 증가하면 추가적인 정부지원이 크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소득수준이 최저임금의 1배에서 3배 사이에 위치한 가구에 대하여 가장 크며, 이는 주로 가족보충금(CF)과 주거보조금(allocations logement)에 기인한다.

이 외에 프랑스의 가족 관련 사회보장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가장 먼저 소득이전의 절대액으로 보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대부분 가족세액공제(QF)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QF는 기본적으로 납세점 미만의 가구에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므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세전 소득수준이 최저임금(SMIC)의 3배가 되는 시점부터 사회적 공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혜택이 증가하게 된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공보육시스템의 구축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부모휴직이 정착되었다는 점이 가족정책의 핵심이다. 2003년 기준으로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26만 7,300명의 여성 중 자녀출산 후 직장으로 돌아와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은 45.1%이며 육아휴직중인 여성의 비중은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 동안 제공하는 급여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편이다. 육아휴직기간은 총 480일로 자녀 나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시기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하여 시간단위로 쪼개어 신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출산 후 소득을 지원하는데 직업이 없

는 부모에 대해서 최소한 평균소득의 23%에 대해서 출산 후 지원한다.

스웨덴은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정부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수혜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보육서비스 공급은 주로 공식적인 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종일제를 기준으로 주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 가정 내 보육이 childminder에 의해 제공되지만 그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학령기의 아동에 대한 보육은 학교 내에서 방과 후 보육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일부는 공적인 보육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보육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부담수준은 상당히 높다. 전체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GDP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가족지원프로그램의 정부지원 비중도 44%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영국의 경우, 가장 특징적인 가족정책 수단은 자녀세액공제 등 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근로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커플의 경우 합산된 연간 소득(gross annual income)에 기초하여 계산되며, 가족의 지축은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나 비근로소득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공제제도의 도입은 개인별 과세에 기초한 소득세제와 지원금 체계(benefit system)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만으로는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정확히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가계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로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공제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가구 내 성인이 아동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어야만 한다. 부양 책임자는 아동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혜택을 받는 대가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등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만 16세 이하의 자녀, 또는 16세 이상 20세 이하로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가족항목(family element)는 해당 아동을 부양하는 모든 가족에 제공되는 공제로서 최고 545파운드까지 제공되

며, 자녀를 새로 출산한 경우에는 가족항목에 추가로 545파운드를 지급한다(가족항목, 신생아). 자녀항목(child element)는 아동의 수에 따라 제공되는 공제로서 신생아를 포함하여 아동 1명에 대해서 최고 1,845파운드를 지급한다. 그 외에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근로세액공제제도는 저소득층의 근로자(자영업자를 포함)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2004년 3월에 도입된 이 제도로 인하여 자녀가 없는 근로가구에 대해서도 금전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특히 근로세액공제에 보육비용에 대한 공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보육서비스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호주는 보육 관련 보조금을 제외하고는 가족정책이 별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핵심적인 보육지원으로는 1991년부터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육료 보조금의 지원을 비영리 보육시설만이 아니라 민간 영리시설까지 확대하고 시설운영보조금을 삭감하게 되면서 보육수당(CCB)이 호주정부의 보육료 보조금의 주요한 방식이 되고 있다.

보육수당의 수혜대상자는 인증제도를 통과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 한 명당 일주일에 최고 24시간까지 보육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 연수나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일주일에 최고 50시간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200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소득인 3만 4,310호주달러 이하인 가족에게 취학 전 아동에게 지원되는 최고금액은 시간당 2.96호주달러로 일주일에 50시간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최대금액은 일주일에 148호주달러이다. 취학아동은 취학 전 아동의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 연소득이 3만 4,310호주달러를 초과하면 보육수당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소득이 9만 8,348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가족에게는 시간당 0.497호주달러가 자녀 한 명당 제공되며 50시간 모두 혜택을 받을 경우 금액은 24.85호주달러가 된다. 이 금액은 인가받은 시설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다. 한편 조부모, 친척, 친구 혹은 직장보육시설의

보모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소득에 불문하고 시간당 0.497호주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04년 호주 보육실태조사 시 시설유형별로 보육수당을 받는 가구 수가 자녀 1인과 자녀 2인 가구에 대해 각각 조사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약 20~35%의 가구가 보육수당의 최대액을 수혜하고 연간 1,301호주달러 이상을 수령하는 가구도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호주정부가 보육료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예산도 상당하여 2004~2005년에 걸친 총 지출은 1.47억호주달러이며 이 중 70%가 long day care 이용아동에게 지급되었으며 이 가운데 ABC Learning에 지급된 것은 약 206억호주달러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가족정책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수준 및 형태를 가지고 있다. 모든 지역에 대해 공통적인 정책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역에 따라 필요에 부합하는 상이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일률적인 해답은 없을 것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아서 퀘벡주를 제외한 캐나다의 많은 지역에서는 보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는 세제지원으로 CCTB가 존재한다. 이는 해당 가구의 자녀 양육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행정적으로 같이 처리되는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NCBS)와 Child Disability Benefit(CDB)를 포함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주 부양자로서 지원금의 수준은 자녀 수와 자녀의 연령, 지역, 가구의 소득,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기본 지원금(basic benefit)은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월 106.91캐나다달러를 지급하며, 세 번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자녀당 월 7.50캐나다달러가 추가된다(단, 앨버타 주정부는 상이한 기본 지원금 지급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7세 이하는 월 97.83달러, 7~11세는 월 104.41달러, 12~15세는 116.83달러, 16~17세는 123.83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소득 3만 7,178캐나다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1자녀 가구의 경우 3만

7,178캐나다달러를 추가하는 부분의 2%만큼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2자녀 가구의 경우 추가하는 부분의 4%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퀘벡주의 가족정책 중 보육지원으로는 1997년 이전 퀘벡주에서는 관허 보육시설 및 규제 대상 보육시설의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일부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도 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보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1997년 9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정책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4세 아동에 대해서 매일 최대 5캐나다달러의 이용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V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 모형을 구축하여 출산과 여성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파라미터 추정치를 이용하여 제IV장에서 분석한 각국의 대표적인 가족정책수단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출산과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가상실험을 통해 산출하였다.

가상실험 결과, 스웨덴의 부모보육료 부담을 4%로 제한하는 정책과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의 80%를 정률로 제공하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출산율은 8.86%, 여성고용률은 3.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주의 CCB를 도입하게 되면 출산율은 3.04%, 여성고용률은 7.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자녀세액공제제와 근로장려세제는 출산율은 10.1%, 여성고용률은 5.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캐나다의 18세 이하 자녀에 대한 부양자에게 자녀 1명당 매월 약 106캐나다달러씩 지원하는 제도는 출산율은 4.9%, 여성고용률은 오히려 -0.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VI장에서는 출산율과 여성고용 제고정책이 잠재GD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성장회계방식을 이용하여 베이스라인 전망결과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연평균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20년대에는 3.94%, 2030년대에는 3.03%, 2040년대에는 2.41%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스라인 외에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고위시나리오와 저위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까지의 잠재성장률도 추계하여 정부정책 개입에 따른 출산율의 변화와 여성고용률의 변화가 성장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도 함께 분석하였다.

제Ⅶ장에서는 앞의 제Ⅱ~Ⅵ장의 분석을 총괄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가족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정책수단 도입 시 출산, 여성고용,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가족정책수단 선택 시 원칙으로는 ①출산과 여성고용 두 가지에 모두 도움이 되는 정책 ②소득계층 간 수직적 형평성과 소득계층 내 수평적 형평성을 위배하지 않는 정책 ③동일한 비용으로 출산과 여성고용을 가장 제고할 수 있는 비용효율적인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정책을 비교하였는데 첫째, 현 차등보육료를 대폭 개선하여 상위소득 20%계층까지 차등보육료를 소득계층별로 차등적으로 수혜하고, 상위소득 10% 맞벌이 가구의 기혼여성에게는 연 60만원의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각 계층별 소득 파악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험료 부과 관련 소득과약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을 동시에 제안하였다.

둘째, 현 차등보육료를 유지하고 국가재정 중기운용계획상 확보되어 있는 기본보조금(영아+유아)을 아동수당으로 제공하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현 차등보육료의 30%(이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동일한 비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도출된 지원수준임)를 제공하는 안을 설계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아동수당 내지 바우처제도를 다소 조정한 안이다.

셋째, 현 육아휴직 관련 급여인 정액 50만원과 이를 소득에 따른 40%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의 비교분석이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고용보험 기금은 보육료 예산과 별개이며 예산규모도 보육료 예산보다 작아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와 비용효율적인 측면에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를 정액제로 제공할 경우와 동일한 비용을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의 정책 효과는 비교가능하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보육보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출산과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제Ⅴ장에서 이용한 구조모형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가상실험을 해보면 출산율은 6.39%, 여성고용률은 13.8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여성의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출산율에는 3.87%, 여성고용률에는 6.19%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첫 번째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동일한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제도는 노동패널의 가구소득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다소 낮아 50만원 정액에 비해 40% 정률의 육아휴직급여의 수혜액이 평균적으로 50만원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50만원 정액 육아휴직은 출산은 0.681%, 노동공급에는 0%의 효과를 나타내고, 40% 정률의 육아휴직급여는 출산에는 0.581%, 노동공급에는 0.004%의 증가를 가져옴을 확인하였다. 동일비용으로 육아휴직급여 제공방식을 전환할 경우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40% 정률제 육아휴직급여의 평균이 약 50만원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위 정책효과는 다소 달라져 정률제 육아휴직급여가 출산과 고용 모두에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의 가족정책 중 보육정책 특히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확대와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이 출산, 고용, 성장률에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하는 기혼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육아휴직제도는 정액제보다는 소득에 따른 정률제가 더 효과가 있음도 역시 보여주고 있다.

◆ 목 차

I. 서 론

II. 우리나라 출산, 보육, 여성노동의 현황

1. 저출산의 원인과 현황
2. 여성노동 공급의 현황 및 장애요인
3. 영유아 보육 현황 및 문제점

III. 출산, 보육, 여성노동 관련 정부정책 현황 및 평가

1. 출산, 보육, 여성노동 담당부처의 정책현황 및 평가
2. 정책 간 조화에 대한 평가

IV. OECD국가들의 가족정책 현황 및 정책효과

1. 프랑스
2. 스웨덴
3. 영국
4. 호주
5. 캐나다
6. 각국 가족정책의 경제적 효과

V. 출산과 여성노동 모형과 정책효과 가상실험

1. 모형의 가정
2. 모형설정
3. 실증분석
4. 가족정책수단의 효과 시뮬레이션

VI. 출산율 및 여성고용 제고정책이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3. 성장회계접근 방식
4. 민감도 분석 및 정책시뮬레이션
5.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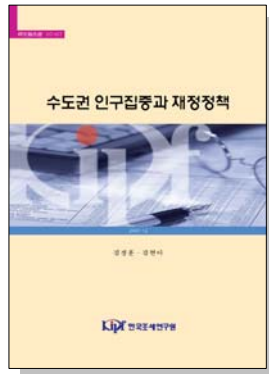
VII. 가족친화적 조세재정정책 방안

1. 조화로운 조세 및 재정지원을 통한 가족정책 설계
 2.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한 방안
 3. 비용효율적인 정부정책 방안
 4.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

VI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부록 1. 여성 고용정책 주요 제도 변화(1999~2005)
 - 부록 2. 성희롱 예방교육 규제와 그에 따른 예방교육 시장
 - 부록 3. 2006년 실적 관련 자료
 - 부록 4. 예산현황
 - 부록 5. 질문사항
-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 ◆ 김정훈 · 김현아
- ◆ 2007. 12

분권은 지역간 격차를 완화시키는가 또는 심화시키는가? 이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대 정책목표가 일관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점은 지난 5년간의 경험이 잘 말해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참여정부 초기에 추진되었던 국세 세원의 지방 이양이다. 국세 세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한 세원 이양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즉 균형발전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국세 세원의 지방 이양은 이미 충분한 세원을 확보하고 있는 수도권을 재정적으로 더욱 지원하는 것이어서 균형발전 정책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충돌과 딜레마는 양 정책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있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분권정책은 지역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균형발전과 양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지역간 격차 문제는 지역간 소득 격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도권의 높은 인구 비중 문제라고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국제 기준으로 볼 때에도 우리나라의 지역간 소득 격차가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 반면,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는 OECD국가들에서 가장 높은 정도로 특징적이다.

사람들이 수도권에 많이 살고자 하는 이유는 수도권의 취업기회 등 시장적 요소와, 수도권에 제공하는 공공재의 혜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우, 시장 메커니즘 이외에 공공부문의 역할이 수도권 인구유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약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공적 재화가 순수공공재, 즉 혼잡효과가 거의 없는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이를 굳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순수공공재의 공급비용은 이를 소비하는 주민들의 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의 효율, 즉 소비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여러 지방정부가 아닌 단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곧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역할이 수도권 집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이전재원이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도권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재정적 요인, 즉 지역간 순재정 편익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이전재원이 이를 거의 상쇄시키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만약 수도권의 순재정 편익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으면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인 이전재원의 규모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주는 정책 시사점은 단순하면서 명료하다. 대도시가 인구 증가를 통하여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면서 세출 부담은 비례적으로 지지 않는 지금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도시의 공공서비스의 제공 책임을 일차적으로 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공공서비스의 제공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관될 경우 재정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는 이전재원을 통하여 여전히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공공서비스의 일차적 제공 책임자를 지자체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간 인력 배치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하면서 또한 동시에 또 다른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정책을 함께 정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II. 정부간 재정 및 균형발전정책 현황

1. 수도권 규제정책 현황
2. 지방재정 지원현황
3. 지역간 인구이동 현황

III. 정부간 재정과 인구이동의 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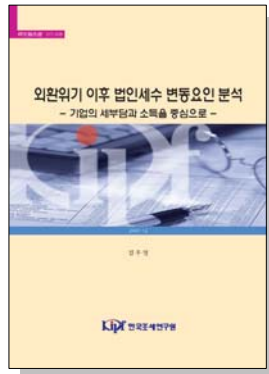
1. 순재정 편익
2. 지방공공재의 혼잡탄력성
3. 수도권 순재정 혜택의 시뮬레이션

IV. 지역간 인구이동의 실증분석

1. 실증분석 연구의 의의
2. 인구이동 및 집중 관련 선행연구
3. 시도간 인구이동 자료에 따른 실증분석
4. NFB 추정치를 이용한 실증분석
5.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V. 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 기업의 세부담과 소득을 중심으로 -

- ◆ 김 우 철
- ◆ 2007. 12

국내 기업들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대외적으로 자본시장의 개방 및 외국 일류기업들과의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대내적으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추구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기업 환경의 변화는 법인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는 법인세수의 변동 원인을 밝혀보고, 미래에도 현재와 같은 추이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가늠해보았다.

법인세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기업 차원의 요인과 그 외의 요인들로 구분하였다. 개별 기업 단위에서 법인세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을 곱함으로써 결정된다. 따라서 법인세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업의 과세소득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의 두 가지 항목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파악해 보았다. 동일한 법인세부담하에서도 기업의 수익 증가는 과세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법인세 납부액을 증가시키므로, 법인세 과세 베이스의 변화는 법인세수 변동과 매우 관련이 깊다. 개별 기업 단위의 법인세 결정 요인 이외에, 전체 법인 기업의 수도 법인세수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나 새로운 법인기업의 설립은 법인세 베이스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법인세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법인세는 소득에 비례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소득의 규모가 큰 몇몇 우량기업들이 전체 법인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법인세수의 증가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 8.5조원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29.8조원으로 10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가 400조원에서 810조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면, 법인세수의 증가는 경제규모의 성장보다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수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여 2005년 국세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23%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의 국세 대비 비중 19%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법인세수의 증가와 더불어 법인세수의 변동성(volatility)도 크게 증가하여, 2000년대의 법인세 변동성은 1980년대에 비해 2.7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수 증가의 원인으로 먼저 법인의 세부담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여 법인세수가 늘어났다면, 이는 법인세제가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의 세부담 변화 추이를 가늠하기 위해, GDP 대비 법인세 징수액,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신고액, 순이자소득을 고려한 영업잉여 대비 법인세 신고액, 국세청 신고소득 대비 법인세 신고액 등의 총계지표들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는 각 지표에 나타난 세부담이 유사한 수준에서 동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표별로 확연히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업 세부담의 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세청 신고소득은 결손기업의 실적이 제외되어 있고 실제 납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지표들에 비해 세부담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한 평균 유효세율은 1980년대 동안 20% 수준

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25% 수준으로 상승한 뒤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최근에는 18% 수준을 보이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세부담은 다소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 세부담의 하락 원인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세부담 결정요인을 명목세율,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명목세율과 이월결손금이 평균 유효세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 2005년 명목세율의 인하와 외환위기 이후의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증가는 평균 유효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은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기업 차원의 세부담이 법인세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는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원인으로 기업 소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상이익률은 외환위기 이전 평균 2.15% 수준을 유지하였고 외환위기 기간에는 -0.67%로 하락한 뒤, 2000년대에 평균 3.41%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기업의 수익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익의 개선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기인한 것인지 재무활동에 기인한 것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영업활동에 기인한다면 미래에도 수익 증가의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재무활동에 기인한다면 향후에는 현재의 소득 증가 추이가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 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재무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영업외손익률은 외환위기 이전 -4% 수준에서 위기 이후 -2.2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소득의 증가가 영업이익의 증가보다는 재무구조 조정의 결과로 나타난 영업외손익의 개선에 기인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총계 자료가 아닌 개별 기업 자료에서도 재무구조 개선이 수익률 증가의 주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분석 등의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패널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과 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의 하락은 경상이익률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50%포인트 감소하면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약

1%포인트 증가하고 부채 대비 이자비용 비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경상이익률은 2.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구조 개선이 경상이익 증가의 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기업의 소득 증가가 몇몇 대기업에 국한된 결과라면, 이는 기업소득의 양극화 문제로 연결된다. 기업 소득의 순위 및 수준에 따른 변이(transition)함수와 비모수적 추정방법(Nadaraya-Watson kernel estimator)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양극화 현상의 존재 여부와 심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미래 경상이익률 순위의 변이함수(조건부 평균)를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금년도에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기업은 다음 해에 다소 낮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고, 금년도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업은 차기연도에 성과가 다소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경상이익률 순위의 변이함수(조건부 평균)의 형태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에 경상이익률 순위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경상이익률 순위의 변이함수와는 달리, 경상이익률 수준 자체의 변이 양상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미래의 경상이익률에 대한 조건부 평균과 45도선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어 우량기업의 높은 경상이익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량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 이익구조의 고착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낮은 경상이익률의 기업의 경우에도 미래 경상이익률의 개선 가능성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 수익구조의 양극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의 경상이익 증가가 전체 기업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 판단된다.

법인세수의 증가에는 개별 기업 차원의 요인 외에 법인 수의 증가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7년에 9만 5천개 수준이던 흑자법인의 수는 2005년에는 22만 3천개로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수의 증가와 유사한 추이를 보여준다. 법인 수의 증가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설명변수로 법인소득뿐 아니라 법인 수를 포함해본 결과, 모

형의 적합도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 수가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법인의 수가 10% 포인트 증가할 때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은 0.5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부실적 상위 100대 기업의 소득과 법인세 납세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기업규모에 따라 분류한 기업군의 소득 차별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법인세(또는 소득)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의 33%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 약 64%로 1.9배 증가하였고, 2002년에 상위 5대 기업이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전체 법인세수의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과세표준(소득)을 기업규모의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평균 유효세율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업의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기업의 세부담은 누진적이거나 또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납부세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의 한계 유효세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여,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납부세액은 증가하였지만 기업의 세부담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대 기업의 납부세액 증가는 기업의 수익률 개선에 따른 법인소득의 증가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익률의 증가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기업군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기업 수익구조의 양극화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업규모의 양극화로 인한 기업소득 격차의 심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의 법인세수 증가 추이가 미래에도 유지될 것인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법인세수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재무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영업외수지 개선 효과는 일정 정도 기여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재무구조 개선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상태로서 더 이상 부채비율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차입이자율 역시 향후에 더 이상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 개별 기업 차원 외의 요인인 법인 수의 증가와 소수 우량기업의 소득 증가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이 기업이 개인기업에 비해 세제상에서 유리한 혜택을 누림에 따

라 법인기업의 신설뿐 아니라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도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법인 수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2009년 이후에 동업기업 (Partnership)과세제도가 실시되면 현재와 같은 법인 수의 급격한 증가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소득의 격차가 심화되고 규모의 양극화가 점차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량기업의 양호한 수익구조가 미래에도 지속된다면, 법인세수의 우량기업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미래 법인세수의 안정적인 증가 추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단기간에 기업의 이윤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제적 요인 이외에 기업회계의 투명화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기업회계 감독과 관련한 주요 조치들과 규정 강화가 기업의 신고소득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 개별 기업의 회계 및 세무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다.

◆ 목 차

I. 서 론

II. 법인세수 변화 추이와 결정 요인

1. 법인세수 추이
2. 법인세수의 주요 결정 요인

III. 총계지표를 통한 법인세부담 분석

1. 총계지표를 이용한 평균적 법인세부담 측정
2. 법인세부담 결정 요인
3. 법인세율의 변화와 감면을 그리고 법인세수

IV. 법인의 소득 변화 분석

1. 사업연도 소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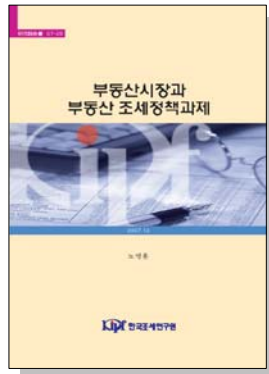
2. 국민계정상의 법인소득: 영업잉여 + 순재산소득
3. 기업경영분석 자료
4. 한국신용평가 자료: Kis-value
5. 실증 분석

V. 법인 수의 증가와 100대 기업 실적의 영향

1. 법인 수의 증가
2. 납부세액 상위 100대 기업의 영향

VI. 결 론

참고문헌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 노 영 훈
- ◆ 2007. 12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시장 자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유형별·지역별 세부 부동산시장과 특성,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분석, 부동산시장 정보와 정책지표를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부동산은 크게 천연 상태의 토지와 여기에 (건물)자본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부동산’으로 나뉜다. 양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토지시장과 주택시장의 작동 원리가 동일하지 않으며 각각에 부과되는 조세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왜곡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만들어지는 부동산의 한 종류인 주택은 주거서비스를 창출하는 자본재인 동시에 축적된 부를 저장하는 자산의 한 형태이다. 또한 이러한 유형별 부동산시장은 지역적 구분으로 더욱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제II장에서는 부동산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 및 보다 효과적인 부동산 조세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유형별·지역별 세부 부동산시장과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처럼 시장의 거래가격 내에 모든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어 효율적이라는 의미에서의 시장 효율성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국내외 기존연구들의 결론은 대체로 주식시장만큼의 효

율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서울지역의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주택시장은 장기적으로나 2001년 이후 기간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시장 가격지표인 주택은행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지수는 실제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지 않고 중개업소가 주관적으로 제공한 ‘거래가능가격’이라는 기본적 한계점 때문에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 지역적 및 유형별 표본추출비용 측면에서도 모집단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고, 단위면적당 임대나 매매가격을 기초로 지수를 산정한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격지수를 통해 시장상황을 판단하고 가격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거나 정책지표에 바로 반영되는 식의 정책은 거래량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시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지역단위의 부동산시장 동향에 보다 정통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적 부동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고, 직접적인 가격규제정책보다는 시장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단지 토지시장에 한해서는 정부가 토지의 용도별 이용규제를 통해 토지공급을 좌우하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 공급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정확한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시장참여자들에게 제공되고 공정한 거래의 룰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택지공급이 이루어지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정부가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에만, 만들어지는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Ⅲ장 및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외국과 비교해 보면 국세 재산보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새로운 조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순부유세처럼 부채를 공제한 순부(net wealth)에 대해 과세하지도 않고 부동산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국세 재산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특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주거서비스 소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주택자본에 대한 과세이

므로 민간 주택자본형성 및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향후 세부담 인상 일정이 입법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경제적 비효율성과 형평성이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중앙과 지방 간 세수 배분을 두고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적어도 주택에 대한 중부세 만큼은 어느 시점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도기간 중에는 임대소득과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주택자산에 대한 외형과세로서의 성격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자가점유자들에게는 귀속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가점유주택은 주택중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사업자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임대소득세를 감안하여 과세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할 것이다.

주택소유갯수별로 주택양도소득세율을 차등화하여(실질적인 임대사업자인 다주택자에게는 중과하면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정지역만 거주요건을 부과할 뿐 비과세 혜택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정책은 자본이득도 소득으로 보아 정상적인 소득과세 기반에 포함하는 많은 나라들의 세계개편 경향과는 다르게 전개되어 왔다. 우리나라 가구의 정상소득과 가구소유 주택자산의 현황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단순한 주택의 소유갯수나 소유주택 자산가액은 납세자의 경제적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님을 양변수 간 상관계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즉, 가구소득이 많은 정도에 비례하여 주택자산가액이 많지도 않고 따라서 미실현 양도차익이 그 만큼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물건시장 대책적 정책세제로 동원되었던 과거 전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통상의 개인소득과 분리되어 과세되는 현행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체계 내에서 과세되어야 인세(personal tax)로서의 특성이 살아나면서 소득기준 형평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현행 규정은 강화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100% 세액공제 또는 과세이연되는 방식의 세제 혜택이 부여되어야 자가점유자(owner-occupier)의 주거서비스 소비를 지원하는 원래 취지를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소유자에게도 주거주주택 1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개편

하는 것이 다주택소유가 일반화되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세제의 발전방향일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II. 부동산시장의 지역별 유형별 구분과 분석

1. 유형별·지역별 세부 부동산시장과 특성
2.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연구
3. 부동산시장 정보와 정책지표

III. 부동산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1.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과세정책 현황: 특징적 사실들(stylized facts)
2. 주택에 대한 보유 및 양도과세와 형평성 분석

IV. 부동산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1. 부동산세제 개편의 기본목표
2. 지방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체계의 조정
3. 양도소득세 기능의 정상화
4. 거래세 완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방법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 ◆ 원종학 · 성명재
- ◆ 2007. 12

「(도시)가계조사」의 원시자료가 이용가능한 기간인 1982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가구소득 기준의 상대소득분배 격차를 나타내는 (시장소득)지니계수는 U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외형상 Kuznets가 주장 하였던 역U자 가설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원시자료 형태의 분석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증하기 어렵지만, 1960년대 이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경제가 성장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상대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의미에서 196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면 역U자 가설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상대소득분배 격차가 확대 추세로 반전되었고 최근까지 점진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확대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에도 고령화 등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도는 당분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소득분배 격차의 계속되는 확대 추세는 연령집단 간 지니계수와 연령 집단 내 지니계수의 상승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

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연령 집단 간 지니계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상대소득분배 격차가 큰 고연령층의 인구비중이 상승함에 따른 고령화 효과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연령집단 내 지니계수의 확대에 의해 소득 불평등도가 커지는 효과도 고령화 효과에 못지않게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집단 내 상대소득분배 격차의 확대에 따른 지니계수의 상승은 고령화로 설명할 수 없다.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부문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 실업률의 변화, 비정규직 비중의 확대, 또는 임금 격차의 확대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 분석을 통해 2000~2006년의 소득분배 격차 가운데 약 2/3 정도는 고령화 효과에 의해 초래된 부분이 크며 나머지 1/3은 인구외적 효과, 또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효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 임금 격차의 변화에 의한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임금 격차의 추이와 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의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임금 격차의 변화 및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① 임금 불평등도는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되다가 1990년대 이후 완만한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② 성별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③ 학력별 임금 격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약간 확대되다가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④ 연령별 임금 격차는 199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으며 ⑤ 사업체규모 간 임금 격차는 분석기간인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⑥ 1980년 이후 노동자의 연령 분포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⑦ 연령이 높을수록 동일 연령집단 내의 임금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령 노동자의 증가가 임금 불평등도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전체 노동자 가운데 동일 연령집단 내 임금 격차가 큰 고령자의 비중이 커짐으로써 실제로는 집단 내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불평등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고학력화와 고연령화가 임금에 미치는 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임금함수의 추정을 통해 임금구조의 변화와 그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추정결과, 사업체규모별 임금 격차는 중기업, 대기업 모두 확대되고 있었으며, 그 크기는 규모가 클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규모에 따른 임금 렌트가 클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업체규모 간 임금 격차는 교육수준을 통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사업체규모에 관한 이상의 추정 결과가 대기업의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에 따른 변화인지, 아니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기업을 선호한 것인지를 안정수요가설에 따라 검증한 결과, 1980년 이후 발생한 우리나라의 임금구조 변화는 안정수요가설과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80년부터 2005년 사이의 중장기적인 임금구조의 변화가 수요측 요인보다는 고학력화나 고연령화와 같은 공급측 요인의 변동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령자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사실상 은퇴하거나 또는 퇴출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공적부문에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장에서 노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인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유희노동력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노동력 부족 현상의 해소 차원에서도 노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학력화에 따른 임금 격차의 확대는 저학력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확대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최근의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주된 요인이, 기타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기인하였다기보다는 고령화와 임금 불평등도의 확대 등에 의한 것인 만큼 소득분배구조 조절을 위한 정

부의 시장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후적 관점에서의 노인대책 등이 바람직하다.

◆ 목 차

- I. 서 론
- II.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1. 기존 연구의 결과
 2. 우리나라 소득분배 격차 현황 및 추이
 3. 주요국의 소득분배 격차 현황 및 추이
- III. 소득분배구조와 인구학적 특성 변화
 1. 인구구조 고령화
 2. 연령대별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와 변화패턴
 3. 연령집단 간 상대소득 격차
 4. 소결
- IV. 임금구조와 소득분배구조
 1. 임금 격차
 2. 임금 격차의 변화
 3. 임금함수의 추정
 4. 임금 격차의 분해 : 수요의 변화인가 공급요인의 변화인가?
 5. 소결
- V.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 추세 저감을 위한 정책대응 방향
 1. 고령화 현상에 대응한 정책방향
 2. 원인별 소득 격차의 확대 추세 저감방안
 3. 정책대응 방향

참고문헌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DIT를 중심으로

- ◆ 안중석 · 전병목
- ◆ 2007. 12

소득세제는 전통적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헤이그-사이먼스(Haig-Simons)의 포괄적 누진과세를 추구하여 왔다. 이러한 포괄적 과세체제는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개인의 세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세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포괄주의 과세제도는 대내적으로 과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이동성이 높은 자본의 이동을 야기할 수 있어 효율성 및 성장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자본에 대한 과세는 미래소비에 대한 과세로서 현재소비에 비해 미래소비를 증과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현실적으로 모든 자본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므로 이론적으로 완벽한 종합소득세제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 아래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그 안들이 갖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세계개혁이 시도된 외국 사례는 아직

없다. 그 이유는 조세체계의 획기적 변화에 따른 이행비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정치적인 관점에서 자본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수입과 소득재분배라는 소득세의 기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점 등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1990년대 이후 북유럽국가들이 도입한 이원적 소득세제(DIT: Dual Income Tax System)가 근본적 세제개혁의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모색하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근본적 세제개혁안과는 달리 DIT는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고율의 누진세율체계를 유지하는 제도로서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자본소득과세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북유럽국가들 외에도 일본에서 2004년에 세제발전심의회 의 권고안으로 DIT 도입방안이 제시된 바 있었으며, 그 외에도 미국, 독일, 스위스 등 주요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논의한 바 있거나 현재 논의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고 세제를 간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원적 소득세제가 검토되지 않았다. 비록 우리나라 자본소득세제의 상당부분이 분리과세를 채택하는 등 내용적으로 이원적 소득세제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자본소득 간 과세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방안을 검토해보고 제도 변경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의 관점에서 분리과세, 저율과세로 변화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과세를 살펴보면 종합과세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원과세에 가까운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대부분의 자본소득은 분리되어 저율 혹은 비과세되고 있으며 금융소득(이자 혹은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종합과세되고 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납세자는 2만 5천명 수준(2005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총 납세자 1,600만명의 0.2% 수준

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자본소득 중 하나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수 상황에 있는 부동산 부문¹⁾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이 비과세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소액주주만 비과세되나 채권양도차익,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이원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종합과세의 추구가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형국이다.

세계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주변국과의 자본유치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행 분리과세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소득 간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성이 높은 자본소득에 대해 비교적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비과세, 저율분리과세, 종합과세가 혼재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자본배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과 비법인 등 사업체 형태에 따른 세부담 차이도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평균실효세율이 적용되는 투자자의 경우 비법인 형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 세부담(종합소득세)이 13.9% 수준이나 법인의 형태를 취할 때는 세부담이 28.8~33.8% 수준으로 늘어 그 격차가 상당하다. 한계세율이 적용될 경우에도 비법인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5.0%, 법인은 40.0~41.5% 수준에 달해 여전히 비법인 형태의 세부담보다 5~6.5%p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본소득세제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소득재분배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소득재분배를 중심으로 살펴본 까닭은 이미 이원적 소득세제에 가까운 자본소득 과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전환에 따른 관련 세부담 인하폭이 낮아 성장촉진 효과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원적 소득세제의 강화는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자본소득 간 형평성 문제를 교정할 수 있으며, 자산소유구조가 다른 소득계층 간 세부담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는 3가지 이원적 소득세제 강화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들 이원적 소득세제는 자본투자

1) 부동산 양도차익의 경우 분리과세되나 세율수준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높은 경우도 있음.

에 있어 투자형태별 왜곡요인을 축소시킴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제도개혁 시나리오 구상에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자본소득 종류 간 세부담 형평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 때 발생하는 세수변화는 부가가치세를 이용하여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식양도차익 과세, 증권거래세 폐지, 비과세·감면처 축의 폐지, 부동산양도차익 과세의 유지를 가정한 시나리오 2가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비과세되던 주식양도차익, 저축 부문을 과세로 전환하여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다시 부가가치세 인하로 환류하는 방안이다. 현재 소득계층별 세부담구조에서 저소득층의 세부담 중 상당부분을 부가가치세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시나리오 2는 소득재분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조달방법에 따른 세부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자기자본공제를 허용하는 시나리오 3은 단기적으로 가장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방안이나, 기업부문 활성화를 통한 성장 및 노동시장 파급효과를 고려한 소득수준 증대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러한 효과는 본 보고서에서 검토되지 않았고 향후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현재 비과세중인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대폭적인 세율 인하로 인해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비해 분포의 편중성이 강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저율과세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부문을 제외한 자본소득의 과세 전환으로 인해 자본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손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나마 소득재분배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은 형평성 개선을 통한 장기적 자본흐름의 개선효과 등을 감안하면 이원적 소득세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이원적 소득세제로의 전환은 소득재분배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비과세·감면 등이 많은 자본소득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세부담이 역진적인 부가가치세의 인하(혹은 증가폭 하락)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폐지, 비과세·감면저축의 축소 등에 긍정적인 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II. 최근의 소득세 과세체계 변화 동향

1. 소득세 과세체계의 발전단계
2. 최근의 소득세제 변화
3. 소득세 과세체계의 비교

III. 이원적 소득세의 이론적·현실적 근거

1. 이원적 소득세제의 이론적 근거
2. 이원적 소득세의 현실적 근거

IV. 주요국의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 현황

1. 스웨덴
2. 노르웨이
3. 핀란드
4. 네덜란드
5. 요약

V.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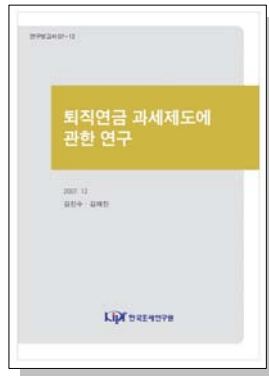
1.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2. 현행 과세체계의 평가

VI. 한국적 이원소득과세 도입방안 모색

1. 선행연구
2. 우리나라의 이원소득과세 도입 시나리오
3. 실증분석

VI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 김진수 · 김재진
- ◆ 2007. 12

I. 주요내용

가. 배경

정부는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가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첫째,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불입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였다. 둘째,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의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한도를 기존의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연금불입 시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하여 불입한 부분에 대해 연금수령시 비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였다. 넷째, 연금불입 도중에 가입자의 주택 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의 발생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허용하는 사유로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퇴직 시 일시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고, 연금수령 시 일괄하여 과세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적립된 자산을 금융기관 간의 이전을 통해 개인퇴직계좌, 확정기여형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

에는 과세이연 후 연금수령 시 일괄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직장이 전 등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한 후 퇴직금 수령 시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이전하기 전의 근무기간과 이전 후 근무기간을 합산하고,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실제 이전된 퇴직연금에 한하여 근속연수를 합산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노사합의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여덟째, 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한도를 축소하였다.

정부가 이처럼 세법개정을 통하여 퇴직연금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기업도산 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의 일시퇴직금 지급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세계은행, OECD 등에서도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1차 사회안전망 중 하나인 국민연금을 통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을 하고, 2차적으로는 퇴직연금을 통하여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3차적으로는 개인연금을 통하여 여유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다층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아직도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이 미흡한 편인데, 현행 퇴직연금 관련 세제가 퇴직연금의 도입을 촉진할 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세부담이 반드시 경감한다고 보장하기 어렵고 추가 기여금에 허용되는 소득공제는 명확한 이득인데 그 규모가 한계적 수준이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소폭 축소되는데 그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유인이 별로 없다.

나. 분석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 먼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의 세 부담을 비교해 보았다.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에서 수급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세 부담이 퇴직일시금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득계층에서는 퇴직연금의 세 부담이 퇴직일시금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직전에 발표한 임병인·김세환(2004)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퇴직연금의 세 부담이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그 이전에 비하여 완화되었지만, 수급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여전히 퇴직일시금에 비하여 불리하며, 특히 고소득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폐지되었을 때 법인세부담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거래소 기업의 경우는 법인세부담액의 절대금액이 상당폭 증가하여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코스닥기업과 외부감사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부담 증가액은 크지 않으나 법인세부담의 증가율이 상당폭 증가하여 결코 작지 않은 부담으로 체감할 것이다. 둘째, 퇴직급여충당금 증액분이 음(-)의 값을 가지는 기업을 제외하고 양(+)의 값을 가지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본다면, 법인세부담의 증가는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3% 내지 10% 정도 인상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산의 규모가 큰 기업은 법인세부담 증가액이 이들 기업의 경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은 법인세부담 증가액이 작지만 법인세부담 증가율이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II. 정책시사점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고 퇴직금이 노후소득보전수단으로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제도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세제상 유인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더라도 많은 퇴직자들이 일시금 형태보다는 연금 형태를 선호하도록 세제가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및 사내유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에 대한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분야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간 세부담 불공평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5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작아진다. 은퇴기에 접어든 경제적 약자인 퇴직자가 일시금을 택해 노후소득보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 형태를 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연금 형태를 선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소득의 과표구간, 공제금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급여비례공제율과 근무연속별공제율의 점진적 축소를 통해 퇴직금의 세부담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정금액 이하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 시보다 과세상 불리하도록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세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를 가능한 사외로 적립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제도의 손금인정한도가 소폭 축소되는 경우에는 기업경영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나, 만일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제도의 손금인정한도가 대폭 축소되거나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이로 인한 법인세부담의 증가액이나 증가율이 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인정한도를 가능한 빠른 속도로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인정한도를 35%에서 30%, 20%, 10% 등으로 계속 축소해야 할 것이며, 결국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확정급여형 사용자 부담금한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계속기준에 의해 사외적립금을 적립하는 기업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기준으로 손금산입한도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어서 비용 증가분만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계속기준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에 추가하여 계속기준에 의한 손금산입한도도 설정하고 계속기준에 의한 손비인정한도와 비계속기준에 의한 손비인정한도 중에서 큰 금액을 손금산입한도로 설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부담금을 전액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고 사외적립금 전액을 손금산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서는 시행 초기부터 장기적으로 연금지급 불능사태라는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확정급여형 근로자부담금 소득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의 한도를 개인연금저축의 한도와 통산할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적정한 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한도와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를 현재와 같이 통산하여 운용한다면 추가기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II.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관련 과세제도

1.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 퇴직소득의 과세체계

III.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와 관련 과세제도

1.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과정

2.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3.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현황
4. 현행 퇴직연금 과세제도

IV. 주요국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1. 미국
2. 일본
3. 국제비교 및 시사점

V.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세부담 비교분석

1. 기존 연구
2. 시뮬레이션
3.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4. 소결

VI. 퇴직급여충담금 손금산입제도의 변화가 기업의 세부담에 미치는 효과분석

1. 기존 연구
2. 실증분석
3. 소결

VII.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정책방향

1.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평가
2. 현행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문제점
3.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기본방향
4.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VIII. 결 론

참고문헌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 ◆ 김승래 · 김우철
- ◆ 2007. 12

일반적으로 정부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은 중요한 조건이다. 조세가 효율적인지는 세수 한 단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로 평가하므로, 이러한 비용의 측정과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 국가의 조세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세목별 초과부담(excess burdens or deadweight costs)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정 세목의 한계초과부담이 기타 세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해당 세목의 세율체계를 상대적으로 조정하여 사회 전체의 효율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후생수준이 증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세제도의 초과부담 추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부분균형분석의 틀 안에서는 각 재화나 요소시장 간의 연관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상태에서 초과부담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부분균형분석에 비해 다수 시장이 존재하는 여러 부문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는 일반균형분석의 경우도 기존의 계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들은 채택된 행태탄력성들이 단순 가정치(guessimates)이거나, 아니면 다른 연구 목적으로, 다른

시점의 표본구간(sample period)에서,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추정된 값들을 단순히 복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한 국가의 조세제도의 주요 세목별 초과부담을 추정하고 서로 비교하는 데 있어, 내적으로 일관된 분석체계(internally consistent framework)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체로 경제의 생산자 행태와 소비자 행태 추정의 기반이 되는 이론모형의 구조 설정에 있어 검정되지 않은 다소 강한 사전적 제약을 도입하거나, 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통로로 초과부담 추정의 주요 요소인 각종 행태탄력성(behavioral elasticities)의 값들을 대체로 다른 연구로부터 단순히 원용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세제도의 효율성(efficiency)을 과거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전반적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일관된 일반균형의 틀 내에서 주요 세목별 초과부담을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여 서로 비교·평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제도 구조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왜곡(distortions)을 초래하고 있는지, 세수 증대(revenue-raising) 측면에서 조세 효율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국민후생 측면에서 경제적 비용은 어떠한지를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적정 조세 체계(optimal tax mix)의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 캘리브레이션 CGE모형에 기초한 기존의 방법에서 나아가, 실제로 한국경제의 1970~2004년의 역사적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주요 세목별 한계초과부담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현행 조세제도를 세목별로 비교 평가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적정 조세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모형의 분석 대상기간인 1970~2004년의 매기별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 35년 동안 일반소비과세의 증가에 따른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은 6.2%에서 15.5%, 수입과세의 경우는 4.4%에서 9.6%, 노동과세의 경우는 9.9%에서 21.2%, 그리

고 자본과세의 경우는 5.9%에서 29.8%로 각각의 실효세율 변화와 비교해 볼 때 크게 증가하였다. 즉, 전체 분석기간 동안의 평균은 일반소비의 경우 8.2%, 수입의 경우 5.7%, 노동의 경우 11.1%를 차지하였다. 조세원칙적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프로젝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 경제주체의 행위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효율 손실로서 조세 효율비용은 정부프로젝트의 단순금액에 추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우리 경제의 정부지출은 한계효율비용 이상의 실질적인 정상수익률을 가져야 조세 증가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는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은 대체로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2004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조세의 한계효율비용의 크기는 자본과세(29.8%), 노동과세(21.2%), 일반소비과세(15.5%), 수입과세(9.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자본과세나 노동과세 등 소득 관련 과세에서 소비 관련 과세로 세원을 이동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주요 세목별 조세의 한계효율비용 추정치는 세부 세율구조 개편, 각종 공제나 비과세·감면조항 변화 등으로 실질적인 실효 세부담구조가 매 기별로 달라짐에 따라 변화한다. 또한 동시에 단순부분균형의 틀과는 달리 일반균형의 틀에서는 소비자 및 생산자의 각종 행태탄력성이나 관련 생산기술 구조와 소비패턴 변화, 기타 경제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그 크기가 다소 복잡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노동과세 및 자본과세의 경우에 그 실효세율 변화 대비 한계효율비용의 변화 추세가 다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은 한국경제의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가 시장변수에 보다 탄력적이고 반응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꾸준히 확대되어온 경제구조의 변화와 대외 개방화의 진전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조세 효율비용의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위하여 이론적 엄밀성을 가지고 경제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 설정 및 추정에 있어서 각종 모형의 탄력성 변수에 보증되지 않은 각종 사전적 제약

조건을 가하지 않는 신축적인 행태방정식들을 사용하였다. 동시에 분석경제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과거의 실제 실증자료에 기반한 계량경제학적 추정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을 추정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균형적 구도하에서 주요 세목 간 효율비용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주로 시계열적 거시 총량자료에 의존하고 단일 소비자를 가정하며 대체로 큰 범주의 상품총계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형의 조세 효율비용 추정을 위한 세목별 암묵적 유효세율의 경우 그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세제의 누진적 요소에 의한 효율비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모형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향후 보다 세분화된(disaggregated) 상품별, 세목별, 그리고 소비자 그룹별로 관련 분석을 심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미시적인 조세패널 자료를 이용한 조세제도의 효율성 평가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선행단계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목 차

I. 서 론

II. 조세 효율비용 추정의 이론적 배경

1. 조세 효율비용의 기본 개념
2. 조세 효율비용의 측정: 부분균형적 접근
3. 조세 효율비용의 측정: 일반균형적 접근

III.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1.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구조 변화 및 특징
2.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국제비교

IV. 조세의 효율비용 추정 모형

1. 소비과세, 관세, 노동과세의 효율비용
2. 자본과세의 효율비용
3. 주요 세목별 한계효율비용 추정 결과

V.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 ◆ 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
- ◆ 2007. 12

최근 들어 양극화 심화나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복지지출, 통일 및 안보 관련 등의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하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조세체계의 효율성 증진과 안정적 세수확보 차원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77년에 처음 도입·시행된 부가가치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세 조달의 중추적 기능을 해왔으며, 세정 및 납세의식의 현대화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여 왔다. 2005년도 부가가치세 세수는 약 36조원으로 간접세수의 80%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30%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그 세원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부담의 전가와 귀착이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경제주체의 행위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과학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제에 관련된 경제적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주요 쟁점이며 또한 향후 부가가치세제 개편에서도 주요 정책과제로 제기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제

도와 세율 그리고 간이과세자 문제를 중심으로, 이들 주요 정책현안들에 대한 각종 제도와 정책평가 및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소득과 자본에 대한 과세 비중이 줄어들고 소비세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는 경제환경의 변화와 그동안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1977년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 현재 면세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새로운 재화와 용역이 등장하면서 과세와 면세의 구분이 모호해져 과세 형평성과 누적효과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즉 일부 품목이 면세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유사한 성격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면세화 요구(exemption creep)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면세가 최종 단계가 아닌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세부담이 더 커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세수에 있어 그 역할 증대가 예상되는 소비과세로서 부가가치세는 그 면세범위의 조정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를 살펴보면, 금융·보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대가를 다른 요인에 의한 대가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현 단계에서도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수취하는 부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며, 더 나아가 금융회사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영세율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익성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면세를 허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허용범위가 EU 등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나라들보다 광범위한 편이다. 이에 향후 부가가치세 세원 확대를 위해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허용범위를 공익성을 가지되 인간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 재정규모의 확대 및 국제적인 조세경쟁 환경 속에서 소비세 비중이 점차 커지는 것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율을 꾸준히 인상한 반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도입 초기부터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이나 통일비용 등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면, 현행 조세체계의 근본적 개혁 차원에서 현재의 기준세율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율 인상을 고려할 경우 일부 생필품 관련 품목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복수세율 체계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인터넷 사용의 급증으로 인해 새로운 거래 유형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의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히 OECD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조세체계는 전자상거래와 전통적인 상거래 간에 중립적이어야 하고, 징세비용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세법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쉽도록 명확하고 단순하여야 하며,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아울러 기술과 경제발전에도 맞출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제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OECD 및 EU 지침을 준용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부가가치세 관련 정책과제로는 주로 세정에 관한 문제들을 들 수 있다. 우선 2008년부터 도입되어 실시되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사업자단위 과세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ERP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에서 의 신고·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전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 문제와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의 축소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보다 알기 쉬운 세법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제시한 부가가치세 관련 정책과제로서 과세베이스의 확대와 관련된 분석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베이스, 유효세율 및 세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하여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일반균형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업종별 일반균형 I-O 실효세율과 상대가격 구조, 세수, 물가 그리고 소득분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주요 면세품목을 과세로 전환한 후 세수 변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면세

품목인 미가공식료품·농림축수산물 부문은 1조 4천억원, 정부·정부대행기관 부문은 5조 6천억원, 여객운송용역 부문 1조 1천억원, 금융·보험용역 부문 8천억원, 의료보건·교육용역 부문은 4조 7천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반면, 도서·신문·잡지 부문은 예외적으로 약 64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보였다.

또한 현행 면세품목들의 과세 전환에 따른 상대가격 및 물가과급효과는 미가공식료품·농림축수산물 부문(0.65%)과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 부문(0.26%)을 제외한 도서·신문·잡지 부문(0.02%), 여객운송용역 부문(0.06%), 금융·보험용역 부문(0.07%), 의료보건·교육용역 부문(0.08%)에서는 대체로 그 효과가 일시적이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면세품목들의 과세 전환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생필품(음·식료품 관련) 등 일부 주요 품목을 제외하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정책적 실효성이 과거에 비해 미약해진 면세품목들을 점진적으로 과세 전환하여 부가가치세제 과세베이스를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세수를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 지원프로그램의 확대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관련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최근 OECD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과도한 면세범위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부가가치세제의 선진화 및 과세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면세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도 과거 금융서비스 등 매출 파악이 힘들거나 단순히 저율과세의 대안으로 면제되었던 품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행 부가가치세제 운용상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부가가치세제의 과세기반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면세 품목의 과세 전환에서 세수 대비 물가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그다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소비세로서의 효율성, 안정성, 단순성 등 각종 긍정적 측면들을 적극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제 과세기반 확대와 관련된 세제개편의 방향은 급진적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근본적 조세개혁 방식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소비 관련 세제로 세원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기능할 필요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제점은 2000년 이후 동결되어 있어 경제성장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면제점 수준이 하락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제 납세의무 면제점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Keen and Mintz(2004)의 단순모형과 Zee(2005)의 모형으로부터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우리나라의 적정 면제점을 도출한 결과, 현행 면제점 수준은 적정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현행 면제점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면제점 수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소폭 상승하는 경우의 면제자 수 및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해 본 결과, 2005년 2기 기준으로 여타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면제자 수는 약 10만 7천건(8.05%)이 증가하고 부가가치세 세수는 연간 355억 5천만원(0.09%)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재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실제 부가가치율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간이과세자들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가가치율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정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구하는 방식만을 제시하고, 매년 또는 매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시행규칙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여 부가가치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세부담 감소를 통해 간이과세의 경제적 유인

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금액이나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을 동결하여 가급적 간이과세자를 줄이려는 정책방향과 상반된 것이므로, 간이과세자 관련 정책방향은 일관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점검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조정과 간이과세 등 주요 정책현안 이슈에 대한 체계적이고 보다 심도 있는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정책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목 차

I. 서 론

II.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현황 및 정책과제

1. 부가가치세제 연혁 및 현황
2. 외국의 부가가치세제와의 비교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정책과제

III. 부가가치세제 과세범위 관련 이슈

1.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조정의 필요성
2. 부가가치세제 과세기반 관련 정책과제
3. 부가가치세제 과세기반 조정 효과
4. 부가가치세제 과세범위 관련 정책 방향

IV. 부가가치세제의 간이과세제도 관련 이슈

1.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VAT threshold)의 적정성 검토
2. 업종별 부가가치율 설정의 타당성 검토
3. 부가가치세제 간이과세 관련 정책방향

V. 결 론

참고문헌



보건·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 ◆ 김중면·김우철
- ◆ 2007. 12

본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장기 추계의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던 문제, 즉 사망률 하락의 속도에 대한 재검증에 따른 인구 추계와, 연령별 진료비(급여비)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 두 가지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장래의 건강보험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사회보장 분야의 지출 장기 추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변수가 장래 연령별·성별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이에 대한 독자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않고 거의 전적으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장래 인구 추계에 의존하였다. 물론 이는 국가기관에서 제시하는 공식통계에 기초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보장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각국의 통계 전담기관이 발표했던 장기 인구 추계는 사망률 하락의 속도를 과소추계하여 인구 전망도 그만큼 오차가 발생했던 사례들이 있고, 무엇보다 장기 지출추이에 대한 연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보험 지출의 장기 추계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변수인 인구의 장기 추계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건강보험 지출이 주로 노령층 인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출산율보다 장래 사망률의 장기 예측 개선에 주력하였다.

본 보고서의 새로운 인구 추계는 대체로 통계청(2006)의 인구 추계와 정성적인 측면에서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 인구가 통계청보다 다소 높게 예측되었다. 정점의 인구는 통계청이 2018년에 49.3백만명으로 예측하였음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2020~2025년에 49.7백만명으로 예측되었으며, 2020년 이후에는 점차 전망치의 격차가 커져서 2050년의 총 인구는 통계청의 42.3백만명보다 약 4% 많은 44.0백만명으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고령화 진행에서는 더 큰 차이가 있어, 2005년에 9.0%로 동일하던 비중이 2020년 이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2050년에 이르러서는 통계청은 38.15%, 본 연구는 41.16%로 거의 8%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보다 세밀한 비교를 위해 양 연구가 전망하는 인구 연령구조를 살펴본 결과, 50대의 장년층 인구는 2050년까지도 양 연구의 전망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2030년에 양 연구 결과 간에 다소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며, 2050년에 이르러서는 고령층 인구 전망의 차이가 뚜렷하며, 특히 여성보다 남성의 고령층 인구에서 본 연구가 통계청 추계결과보다 높게 나왔다. 이러한 차이는 80세 이상의 초고령층의 사망률 추계에서 통계청(2006)은 연구에 참고하였던 Lee & Carter(1992)가 제시한 방식과는 달리 상당히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은 Brass Logit 기법을 채택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Lee & Carter(1992)와 마찬가지로 Coale-Guo(Coale-Kisker) 기법을 사용하여 80세 이상 초고령층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인구 추계의 문제와는 별도로, 본 보고서에는 진료비 수준의 상승을 추계하는 방법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연구 방법에 따른 소득탄력성 기법과 더불어 새로이 연령별 진료비의 향후 변화를 Factor analysis 기법으로 추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Factor analysis 기법으로 추계할 경우, 기존 연구가 건강보험의 향후 급여비가 2050년경에 GDP 대비 약 6~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에 비해, 이보다 상당히 높은 약 13% 수준까지도 전망치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기존 연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어찌보면 그리 비현실적인 전망이 아닐 수도 있다. 건강보험 급여가 국민의료비

중 약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으며, 이미 선진국 중에서 의료비가 높은 국가는 국민의료비가 GDP 대비 약 15%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며, 2050년경에는 우리의 고령화 수준은 물론, 소득 수준 역시 현재 관측되는 선진국 수준을 충분히 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2050년경에는 국민의료비가 GDP 대비 15~20% 수준에 이르고, 건강보험은 그 중 절반을 넘어서 국민의료비의 약 60~70%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GDP의 10%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 다다르는 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사료된다.

본 보고서에는 그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인 수준으로 연령별 진료비의 증가가 제약될 것으로 상정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보고서에서 재추계한 인구 전망을 사용하였을 경우, 기존의 소득탄력성에 기반한 추계 결과보다 건강보험 급여비가 2050년 기준으로 약 10% 더 높게 전망되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할 때, 기존의 연구나 장기 재정계획에서 상정한 것보다도 의료비 전반과 건강보험 급여지출 수준이 향후 더 높을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국정의 중장기 운용계획은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론

II. 인구 추계⁴

1. 사망률 추계
2. 인구 추계
3. 기존 인구 전망과의 비교

Ⅲ. 건강보험 장기 지출 추계

1. 지출 추계 기존 연구
2. 이용 자료
3. 추계방법 I: 소득탄력성 접근 방법⁹²
4. 추계방법 II: Lee and Carter(1992) 방식 응용

Ⅳ. 결 론

1. 민감도 분석
2.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 ◆ 김형준 · 박명호
- ◆ 2007. 12.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한 연구로는 정수화(1993), 차신준(1994)과 곽태원(1994)이 있다. 이 중 정수화(1993)는 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였으며 차신준(1994)과 곽태원(1994)은 설문조사를 이용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이었다. 하지만 차신준(1994)과 곽태원(1994)에서도 통계학적인 분석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통계학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차신준(1994)에서는 법인세액의 약 1.4% 수준이었고 곽태원(1994)에서는 0.76%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7,816만원이고, 이는 평균 납부세액의 1.14% 수준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많은 법인들을 많이 표본 추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법인세액의 약 3% 정도가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으로 보인다.

법인세에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증가하지만, 매출액에 비해 상당히 느린 속도로 증가하여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도리어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에서는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약 40%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04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은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모든 세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의 횟수가 증가할 때도 납세협력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에 따른 납부세액의 증가가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보다 빨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교하면, 두 세목에서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는 모두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부가가치세에서보다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납부세액도 법인세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을 보면 도리어 부가가치세에서 약간씩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교하면 법인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평균치가 큰 반면 부가가치세에서의 역진성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의 이러한 역진성은 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 합한 경우 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은 납부세액의 약 1.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비율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체의 규모와 세무조사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납세협력비용의 가장 큰 특징은 역진성이다. 납세협력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업체의 규모이며 사업체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증가하지만 증가 속도가 상당히 느려 납부세액이나 매출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사업체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세목들에서 중소기업과 같이 사업체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인세의 경우 물론 이들 기업이 납부하는 세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납세협력비용이 납부세액의 약 40%에 달하고 있어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만큼이나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목 차

I. 서 론

II.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필요성

1. 납세협력비용이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기존 연구
3.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필요성

III.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1. 시기별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2. 국가별 납세협력비용 추정과 활용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 자료와 납세협력비용 계산 방법의 소개
2.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3.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4.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5.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

V. 결론 및 시사점

1.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 추정결과 요약
2.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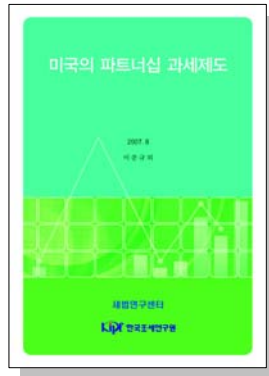
참고문헌

〈부록〉 납세협력비용 관련 설문지



기타보고서

www.kipf.re.kr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 ◆ 이 준 규 외
- ◆ 2007. 8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법체계 및 법전통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와 같이 행정규칙에 의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대부분을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대부분의 과세규정을 두는 것은 포괄위임에 해당되어 위헌으로 판정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파트너십 과세규정의 대부분을 법률에 담으려고 하면 소득세법의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뿐 아니라 개정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경우와 같이 파트너를 궁극적인 납세의무자로 하되, 납세 및 행정편의상 소득 또는 결손의 산정은 파트너십 단계에서 하고 이를 배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소득을 산정하고 배분하는 규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조세회피방지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연결납세에 관한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 규정은 위헌 논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국의 제도를 참고

로 규제되는 조세회피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파트너십 소득의 배분과 관련하여 미국 세법상 상당한 경제적 효과의 개념은 조세회피의 방지와 실질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세법에도 필요하다. 다만, 미국 세법상의 상당한 경제적 효과의 개념은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여 이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입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할 때 이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상당한 경제적 효과의 개념을 단순화하면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증가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의 상당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상법상 파트너십 제도가 도입된다면 현행 제도하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법인으로 설립될 기업이 파트너십의 형태로 조직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여 입법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 제도와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우리나라에 생소한 제도로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태의 제도를 고안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목 차

I. 파트너십제도

1. 개요
2. 무한책임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3. 유한파트너십, 유한책임파트너십 및 유한책임유한파트너십
4. 유한책임회사

II. 파트너십 과세의 개요

1. 개요
 2. 실체론과 도관론
 3. 기업형태의 세법상 분류
 4. 기업형태의 선택
 5. 특례가 적용되는 파트너십
- III. 파트너십의 결성
1. 재산의 출자
 2. 파트너십 부채
 3. 노무출자
- IV. 파트너십의 운영
1. 실체 또는 도관으로서의 파트너십
 2. 과세연도
 3. 파트너십의 소득
 4. 파트너십의 결손
 5. 대형파트너십
- V. 파트너십의 손익 및 부채의 배분
1. 손익배분의 원칙
 2. 상당한 경제적 효과
 3. 상환청구불능부채와 관련한 손익의 배분
 4. 현물출자자산과 관련한 손익배분
 5. 파트너십 부채의 배분
- VI. 파트너와 파트너십 간의 거래
1. 개 요
 2. 파트너의 자격으로 행위하지 아니한 거래
 3. 확정지급액
 4. 확정지급액 이외의 파트너십 업무에 대한 대가
-

VII. 파트너십 지분의 양도

1. 지분을 양도하는 파트너
2. 지분을 양수하는 파트너

VIII. 파트너십의 분배 및 종료

1. 파트너십의 분배
2. 파트너십의 종료

IX. 파트너의 은퇴 및 사망

1. 개요
2. 분배로 보는 청산지급(IRC §736(b))
 3. 손익분배지분 또는 확정지급으로 보는 청산지급(IRC §736(a))
 4. 매각 또는 청산
 5. 파트너의 사망

참고문헌

부록 I: 약어

부록 II: 파트너십 소득신고서(K-1)

부록 III: 파트너십 과세 관련규정

1. 미국 연방세법(IRC)
 2. 미국 재무부 시행규칙(Treasury Regulation)
-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

- ◆ 손원익 · 박태규
- ◆ 2008. 2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기업 모두를 포함하는 민간기부의 현황에서부터 기부와 관련된 조세제도, 기부와 관련된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기부의 동기 규명을 위한 실증분석, 기업기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세제의 기업기부에 대한 효과 및 기업기부의 동기 규명을 위한 실증분석 등이 수행되었다.

기부와 관련된 조세제도는 최근에 개정된 세제를 포함하고, 주요국의 기부 및 비영리단체 관련 세제를 소개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비영리단체의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국별로 정리된 것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1. 개인기부 및 기업기부에 대한 실증분석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 연구에 대한 폭 넓은 심층적 문헌고찰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부 동기 및 세제의 영향에 대하여 실

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 기부의 소득공제 한도 (현재 소득의 5%) 때문에 기부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이윤 극대화 모형에서도 세율이 기업의 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기존의 이론적 논의에 따르더라도 소득공제 한도의 소진 여부와 추가적인 기부와의 관계에 따라 동일한 기업에서도 기부의 동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즉, 기업의 기부와 관련된 조세정책은 개별 기업의 기부규모와 당해기업의 소득공제 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대상기업들의 예상 기부행태를 분석하여 정책의 기대효과를 산출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기부에 대한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는 기부자의 소득, 기부금에 대한 세제감면 그리고 연령, 성별 등 인구사회적 변수들이 개인기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처럼 어느 사회에서든지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는 것은 개인기부의 활성화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외국의 연구들에서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반드시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기부는 그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개인기부에 대한 분석에서 개인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앞서 설명한 기부금 관련 조세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기부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특정 사회복지성 기부금에 대해 공제한도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기부금 총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²⁾.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대로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부금 총액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기부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수를 나타내는 기부참가율, 개별 기부자들의 기부금액, 그리고 기부자들이 얼마

2) 기부금에 대한 세법상 공제제도가 기부에 미치는 효과는 2002년의 자료분석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Park, T. & S. Park, "An economic study on charitable giving of individuals in Korea: some new findings from 2002 survey data," 6th ISTR Conference, Toronto, Canada, 11-14 July 2004 참조.

나 자주 기부활동에 참가하는지가 중요한 지표이다. 현재로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지표에 영향을 동시에 주는 요인으로는 자원봉사의 경험이다.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기부참가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부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기부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공익적 활동에 자신들의 시간을 기부하는 자원봉사를 통해 금전적 기부인 기부활동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기부한 사람들 중에서 보다 많은 기부금을 기부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2.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한국 사회에서 개인기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서구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이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또한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개인들의 기부금액뿐 아니라 전체 개인기부금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우선 개인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기부활동에 이미 참여하는 기부자들이 대부분 간헐적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정기적인 기부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기부자들의 기부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이미 기

3) 자원봉사와 기부참가율, 기부금액에 대한 영향은 1999년과 2001년의 자료분석에서 모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규·정영석(2003), Park, T. & S. Park, "An economic study on charitable giving of individuals in Korea: some new findings from 2002 survey data," 참조.

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부횟수와 기부금액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기부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기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개인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가. 기부에 대한 조세정책의 지원과 관리제도의 강화

개인기부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개인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비율과 기부금액에 조세혜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득세의 기부금 공제비율이 5%에서 10%로 증가한 이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이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기부에 대한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에 대한 공제비율이 5%로 한정되었다가 2000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10%로 상향조정되면서 개인기부금의 규모가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부금 악용의 사례가 숫적으로는 적을지라도 이는 기부문화 정착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한 허위,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제도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나. 자선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개인기부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부자들의 경우에도 우리 사회에서 개인기부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선단체를 비롯한 기부의 대상기관들의 투명성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자선단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이 점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기부금에 대한 세법상의 우대자격을 받는 경우에는 재무회계상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⁴⁾. 또한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 있는 자선적 단체들의 경우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사회의 자선단체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구의 자율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단체의 허위 영수증 발급에 대해 가산세를 상향 조정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지정기부금단체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등 자선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통한 개인기부문화의 정착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의 경험이 개인들의 기부활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를 통해 자원봉사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뿐 아니라 기부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깨닫는 중요한 계기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6년에 제정되어 자원봉사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의 법적인 지위 획득,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제적인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참여자들에 대한 기회비용의 일부(일정비용 또는 일정금액)를 지정기부금과 같이 소득세법에서 처리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200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서 동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를 공시토록 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목 차

- I. 서 론
 - II. 기부금 지출 현황
 - 1. 우리나라의 기부금 지출 현황
 - 2. 주요 외국의 기부금 지출 현황
 - III. 기부금 관련 조세지원제도
 - 1. 우리나라
 - 2. 미 국
 - 3. 영 국
 - 4. 일 본
 - 5. 프랑스
 - 6. 독 일
 - 7. 대 만
 - 8. 주요국의 기부금세제 비교
 - IV.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관련 제도
 - 1. 우리나라
 - 2. 미 국
 - 3. 일 본
 - V. 개인기부의 현황과 분석
 - 1. 개인의 기부 동기
 - 2. 개인기부행위 요인분석
 - 3. 기부횟수에 대한 분석
 - VI. 기업의 기부
 - 1. 기업의 기부 관련 선행연구
 - 2. 실증분석
-

VII.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2. 법인기부에 대한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개인기부에 대한 자료

1. 한국에서의 개인기부 설문조사자료
 2. 1999~2005년 기간 동안의 개인기부 현황
 3. 기부참여율, 기부의 정기성, 기부횟수
 4. 개인기부 정착의 세 지표
-



세법연구

www.kipf.re.kr



경매·공매제도 비교를 통한 체납조세 징수업무의 합리화 방안

- ◆ 한상국 · 안경봉 · 마정화
- ◆ 2007. 11.

I. 서론

II. 체납조세 징수제도

1. 우리나라의 체납액 현황
2. 징수와 체납처분

III. 경매와 공매의 비교

1. 경매와 공매의 개념
2. 경매와 공매의 절차
3. 경매와 공매의 비교

IV. 현행 체납처분제도의 문제점

1. 배분대상채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
2. 공매통지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문제점
3. 배분요구의 종기 규정 미비에 따른 문제점
4. 교부청구 규정 및 배분잔액 귀속 규정에 대한 문제점
5.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의 경합에 따른 문제점

V. 개선 방안

1. 배분대상채권의 범위 확대
2. 공매통지 대상자의 범위 확대
3. 배분요구의 종기 규정 신설
4. 교부청구 규정 및 배분잔액 귀속 규정의 개선
5. 공매 절차와 경매 절차의 경합시 조정 절차 마련

참고문헌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 전병목 · 김태훈 · 문예영
- ◆ 2007. 11.

I. 서론

II. 우리나라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현황

1. 간접투자제도
2. 간접투자기구 과세이론
3. 간접투자기구의 소득구분
4. 투자자의 과세제도
5. 간접투자기구의 과세제도

III. 주요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

1. 영국
2. 미 국
3. 일 본

IV.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간접투자와 관련된 국제조세 제도

1. 한국의 국제 간접투자세제
2. 영국의 국제 간접투자세제
3. 미국의 국제 간접투자세제

4. 일본의 국제 간접투자세제

V. 간접투자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주요국의 입법례

1. 직접투자와의 조세형평성에 관련된 문제점
2.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에 관련된 문제점

VI. 시사점

1. 투자자가 배분받은 소득의 구분
2. 투자손실을 반영한 과세소득인정
3. 도관 또는 실체에 대한 구분

참고문헌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 ◆ 박명호 · 문예영
- ◆ 2007. 11.

I. 서론

II. 우리나라의 주세 및 주류행정체계

1.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
2. 우리나라의 주류행정체계

III. OECD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

1. OECD 국가의 주세율 체계
2. OECD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제도

IV.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주류제조의 시설기준
2. 주류판매면허제도 연혁



중소기업지원세제 관련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 ◆ 김진수 · 송은주 · 마정화
- ◆ 2007. 11.

I. 서론

II.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범위

1. 중소기업 현황
2. 중소기업의 범위
3. 조세지원별 중소기업의 범위

III.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

1. 미 국
2. 영 국
3. 일 본
4. 대 만

IV.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1.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
2.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3. 조세지원 단계별 중소기업의 범위

참 고 문 헌

부록: 각국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I. 우리나라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II. 미국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III. 영국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IV. 일본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V. 대만의 조세지원별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 ◆ 손원익 · 김정아 · 송은주
- ◆ 2007. 11.

I. 서론

II. 기부금 지출 현황

1. 미국의 기부금 현황
2. 영국의 기부금 현황

III. 주요국의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1. 미 국
2. 영 국
3. 일 본
4. 프 랑 스
5. 독 일
6. 대 만

IV. 주요국의 기부금세제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 비교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연구

- ◆ 전병목 · 정희선
- ◆ 2007. 11.

I. 서론

II. 부가가치세 과세단위 현황 및 문제점

1. 부가가치세 과세단위 관련 입법 현황
2. 사업장단위 과세제도의 문제점

III.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과세단위 사례

1. EU 일반지침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소결

IV.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도입 필요성

1.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기대효과
2.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3. 소결

V.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1. 단계적 도입의 필요성
2.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도입방안
3.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도입시 고려사항

VI. 결 론

참고문헌



금융허브 국가들의 조세제도

- ◆ 전병목 · 정희선 · 조진권 · 기은선 · 박임수
- ◆ 2007. 11.

I. 서론

II. 아일랜드

1. 아일랜드의 외자유치 현황
2. 소득과세제도
3. 국제투자소득 과세제도
4. 시사점

III. 두바이(Dubai)

1. 금융부문(Financial Sector) 현황
2. 소득과세제도
3. 국제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시사점

IV. 싱가포르

1. 금융부문 현황
2. 소득과세제도
3. 국제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4. 시사점

V. 홍콩

1. 금융부분 현황
2. 소득관련 조세제도
3. 시사점

참고문헌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비교분석 연구

- ◆ 성명재 · 박임수
- ◆ 2007. 11.

I. 서론

II.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 | | | |
|--------|-------|-------|
| 1. 한국 | 2. 미국 | 3. 영국 |
| 4. 캐나다 | 5. 일본 | 6. 대만 |
| 7. 홍콩 | 8. 중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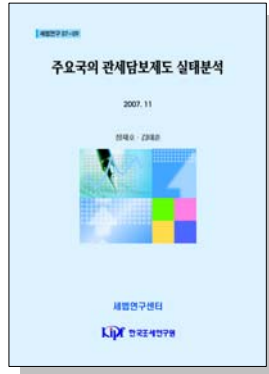
III. 각국의 주요 개별소비세 품목 비교

1. 주세의 국제비교
2. 담배세의 국제비교
3. 석유류의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4. 자동차 취득단계 세금의 국제비교

IV. 요약

1.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비교
2. OECD 국가의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 비교

참고문헌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실태분석

- ◆ 정재호 · 김태훈
- ◆ 2007. 11.

I. 서론

II. 우리나라의 관세담보제도

1. 개관
2. 담보제공사유
3. 담보제공자
4. 담보제공
5. 담보물의 종류
6. 담보제공 사유별 담보액 평가
7. 담보의 변경
8. 담보의 종료

III.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1. EU
2. 일본
3. 미국
4. 호주
5. 영국

IV. 시사점

참고문헌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 ◆ 홍범교 · 기은선
- ◆ 2007. 12

I. 서론

II.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1. 영 국
2. 중 국
3. 싱가포르
4. 말레이시아
5. 대 만
6. 홍콩

III. 결론

참고문헌



외국의 세무사제도 연구

- ◆ 박명호 · 기은선 · 김정아
- ◆ 2007. 12

I. 서론

II.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 현황

1. 세무사의 자격요건
2. 세무사의 업무 범위
3.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와 설립요건
4.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의무
5. 징계사유
6. 조세전문가로서 역할과 그 위상
7. 최근 세무서비스 시장의 개방 추이

III. 외국의 세무사제도 현황

1. 북아메리카지역
2. 유럽지역
3. 아시아 및 호주지역

IV. 세무사제도의 국제비교

1.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의 존재 여부

2. 세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의 범위
3. 세무대리인의 자격요건
4. 세무사 등록현황
5. 세무사의 업무 범위
6. 세무법인의 법적 형태 및 설립요건

V. 결 론

참고문헌



외국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중 최소부과원칙 운영 현황

- ◆ 원종학 · 구자은 · 김태훈 · 조진권
- ◆ 2007. 12

I. 서론

II.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제도

1. 덤핑방지관세제도 의의
2.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 현황
3.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원칙
4. 우리나라 제도의 요약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III. 외국의 덤핑방지관세제도 및 최소부과원칙

1. 개관
2. 최소부과원칙의 법제화
3. 최소부과원칙의 비법제화
4. 요약
5. 소결

IV. 외국의 최소부과원칙 운용사례

1. EU

2. 뉴질랜드
3. 캐나다(공공이익 적용사례)
4. 소결

V. 결 론

1. 최소부과원칙의 명문화
2. Underselling 방식의 도입
3. 공익을 고려한 피해마진산정
4.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주요국의 환급가산금제도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

- ◆ 한상국 · 구지은
- ◆ 2007. 12

I. 서론

II. 우리나라의 제도

1. 환급가산금에 대한 구분
2. 기산일

III. 주요국의 환급가산금제도

1. 미국의 환급가산금
2. 일본의 환급가산금
3. 독일의 환급가산금
4. 영국의 환급가산금

IV. 논의점

1. 환급가산금과 미납부가산세 간의 이자율의 형평성
2. 국세환급금제도 기산일 재검토
3. 기산일 상호 간 관계의 불명료성
4. 각 세법 간의 조율

참고문헌

부록: 주요국의 가산세 관련 법규정(미국, 일본, 독일)

1. 미국의 환급가산금 관련 법조문(Internal Revenue Code, IRC)
 2. 일본의 환급가산금 관련 법조문
-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 연구

- ◆ 김진수 · 김정아 · 마정화
- ◆ 2007. 12

- I. 서론
 - II. 우리나라의 조세범처벌제도
 - 1. 조세범의 처벌 현황
 - 2. 조세범처벌제도
 - III.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
 - 1. 미 국 2. 영 국
 - 3. 일 본 4. 독 일
 - 5. 호 주 6. 캐나다
 -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 1. 국제비교
 - 2. 시사점
 - V. 결론
- 참고문헌

부록 : 주요국의 조세법 관련 법규정(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1. 미국의 조세법 관련 법조문(Internal Revenue Code, IRC)
 2. 일본의 조세법 관련 법조문
 3. 호주의 조세법 관련 법조문(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4. 캐나다의 조세법 관련 법조문
-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주요국의 사례

- ◆ 안종석 · 구지은
- ◆ 2007. 12

I. 서론

II.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제 과세원칙

1. 모델조약
2.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3.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적용

III. 우리나라의 비거주자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범위
2. 과세방법

IV. 주요국의 주식양도소득 과세제도

1. 미 국
2. 일 본
3. 캐나 다
4. 독 일
5. 호 주

V.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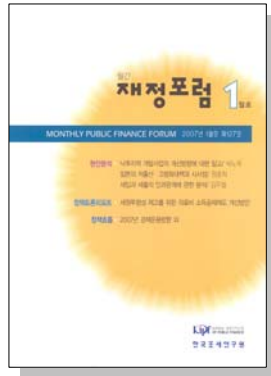
1. 조세조약
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3. 원천징수체계 관련
4. 조세회피관련

참고문헌



재정포럼

www.kipf.re.kr



2007년 1월호
(통권 제127호)

1. 권두칼럼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혁의 필요성
/최용선

2. 현안분석

- 1)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일고/박노욱
- 2)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시사점/원종학
- 3) 세입과 세출의 인과관계에 관한 분석/김우철

3. 정책토론포트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
공제제도 개선방안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2007년 中수출입관세를 어떻게 달라
지나 외

5.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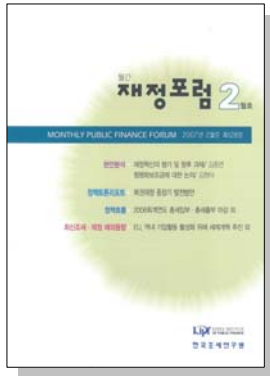
- 1) 2007년 경제운용방향
- 2) 내년도 예산 국회 통과
- 3) 2007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
- 4) 건물기준시가

6.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총조세 대비 사
회보장기여금 비중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2007 부동산 시장에 거는 기대 외



2007년 2월호
(통권 제128호)

1. 권두칼럼

차기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유일호

2. 현안분석

1) 재정혁신의 평가 및 향후 과제/
김종면

2) 형평화보조금에 대한 논의/김현아

3. 정책토론포트

복권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EU, 역내 기업활동 활성화 위해 세
제개혁 추진 의

5. 정책흐름

1) 2006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2) 2007년 세법 시행령·규칙(안)

3) '07년 국채발행 및 국채시장 활성화
계획

4) '06년 재정집행실적 예년에 비해
대폭 개선

6. 재정통계

OECD 국가의 GDP, 총조세 대비 원
천징수 재산과세 비중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 개혁, 정치권 결단해야 의



2007년 3월호
(통권 제129호)

1. 권두칼럼

공평한 조세부담이란?/원윤희

2. 현안분석

1)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한 검토/
박형수

2)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전병목

3. 정책토론티포트

납세자 의식과 세정개혁 방향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미국-도미니카공화국 간 FTA 발효
외

5. 정책흐름

1) 참여정부 4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

2) 2005년도 정부부문 전체 통합재정
결산 보고

3)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경
제교류 전망

6. 재정통계

OECD 국가의 소비세 비중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조세피난처 더 이상 설 곳 없다 외



2007년 4월호
(통권 제130호)

1. 권두칼럼

예산과정과 예산정치/신해룡

2. 현안분석

- 1)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부담 비교/김진수
- 2) 소득이동성과 빈곤의 관계/성명재

3. 정책토론회

금융제도 및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제도

4. 정책연구

- 1) 기업인수·합병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김진수·이준규
- 2)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김현숙·성명재
- 3)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

에 관한 연구/박형수·류덕현

- 4)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김완석

5.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영국소득·법인세 2%p 인하 외

6. 정책흐름

- 1)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
- 2)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3)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7. 재정통계

OECD 국가의 소비세 비중 II

8.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시장실패적 현상과 정부정책의 색깔 외



2007년 5월호
(통권 제131호)

1. 권두칼럼

재정의 효율성과 비영리 조직의 역할
/박태규

2. 현안분석

- 1) 주택시장 가격정책에 대한 소고/
노영훈
- 2)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복지
와 선택을 중심으로/김 진

3. 정책연구

- 1) WTO DDA 협상과 관세율체계 변
화 연구/정재호 · 박순찬
- 2)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안중석 외
- 3)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발전
방향/김정훈 · 김현아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중국, 일본 기업에 이중과세 철회 외

5.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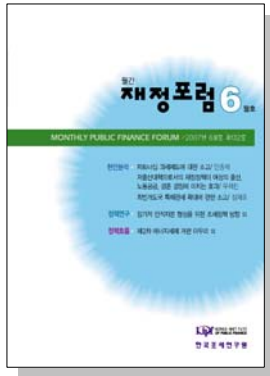
- 1) IMD의 2007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 2) 한-EU FTA 협상 개시 결정
- 3)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4)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 5)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금년
도 재산세 평균 5.3% 오른다

6. 재정통계

총재정 규모 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한·EU FTA의 성공전략 외



2007년 6월호
(통권 제132호)

1. 권두칼럼

조세문화의 창달/이만우

2. 현안분석

- 1)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관한 소고/안중석
- 2)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우석진
- 3)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확대에 관한 소고/정재호

3. 정책연구

- 1)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김현숙 · 류덕현 · 민희철
- 2)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안중석 · 홍범교
- 3) 한국의 조세 · 재정정책 평가 모형/김승래

- 4) 국제기본법 개편방안/김완석 · 한상국 · 박 훈

4.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중국, 이진가격 조작 등에 대한 세무 조사 강화 외

5.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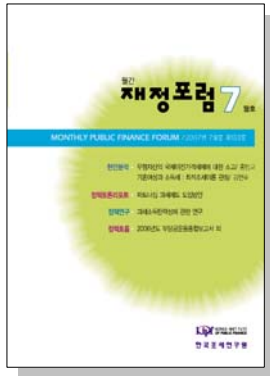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마무리
- 3) 한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표
- 4) OECD, 경제전망 발표

6. 재정통계

일반회계 일반재정 세입세출 결산규모 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기회다 외



2007년 7월호
(통권 제133호)

1. 권두칼럼

국가재정법과 국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이인실

2. 현안분석

- 1) 무형자산의 국제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소고/홍범교
- 2) 기혼여성과 소득세: 최적조세이론 관점/김현숙

3. 정책토론회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4. 해외동향

일본의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7」

5. 정책연구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전병목

6.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중국, 이자소득세 폐지한다 외

7. 정책흐름

- 1) 200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 3)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확정
-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
- 5)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8. 재정통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총액 외

9.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불투명한 NGO 회계 기부문화 죽인다 외



2007년 9월호
(통권 제135호)

1. 권두칼럼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현재와 미래/
김유찬

2. 현안분석

- 1) 우리나라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평가/박노욱
- 2) 공무원 및 공적부문 임금 결정/원종학

3. 특별기획

- 1) 2007년 세제개편의 방향 및 주요 내용/김낙회
- 2) 2007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I)/이철인
- 3) 2007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II)/전병목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日, 소비세 1%p 인상추진...연금재원 확보 위해 외

5.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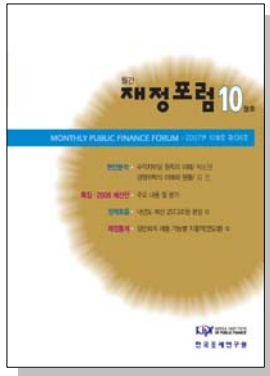
- 1) 2007년 세제개편(안)
- 2) 금년도 국세징수 실적 호조
- 3) 세수추계 오차 발생원인과 개선방안

6. 재정통계

연도별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총괄내역 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기금 독립 운용, 효율 높일 계기다 외



2007년 10월호
(통권 제136호)

1. 권두칼럼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국가재정/
김동건

2. 현안분석

- 1) 수익자부담 원칙의 이해/박상원
- 2) 경쟁위탁(competitive sourcing)의 이해와 현황/김진

3. 특별기획

- 1)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투자 확대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김용호
- 2) 사회적 투자의 활성화를 실험하는 2008년 예산안/이원희
- 3) 국가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우석진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재무·상무부, 인터넷서비스 과세 영구유예 요청 외

5. 정책흐름

- 1) 내년도 예산 257.3조원 편성
- 2) 「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xation)」 도입 추진
- 3)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
- 4) ‘세금부담 계산기’ 다시 두드려 보니...
- 5)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일제 조사

6. 재정통계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지출액(연도별) 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수익률 2%p 상승, 갈 길 먼 국민연금 외



2007년 11월호
(통권 제137호)

1. 권두칼럼

세계화 그리고 양극화/유일호

2. 현안분석

- 1) 소득분배 및 재분배구조: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성명재
- 2)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정책사례와 시사점/김승래
- 3) 근로연계복지제도(In-Work Benefits)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전병목

3. 특별기획

제도설계이론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김 진

4. 최신조세·재정 해외동향

美-EU, 에탄올 면세 브라질 案 거부 외

5. 정책흐름

- 1)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최소 43% 세부담 경감
- 2) 2007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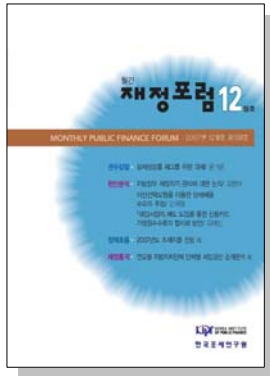
- 3) 200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 4) 소득증가 및 소득공제 확대로 지난 5년간 세부담 변화 미미
- 5)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 민자사업 발굴
- 6) 내년부터 비상임이사·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실시
- 7)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조정
- 8)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 9) 200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발표

6. 재정통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 규모 외

7.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다 외



2007년 12월호
(통권 제138호)

1. 권두칼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과제/
온기운

2. 현안분석

- 1) 지방정부 재정위기관리에 대한 논의/김현아
- 2)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을 이용한 담배제품 수요의 추정/민희철
- 3) 「매입사업자」제도 도입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합히화 방안/김재진

3.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 민주 주자들 중산층 논쟁...오바마
과세확대 주장에 힐러리 반대 외

4.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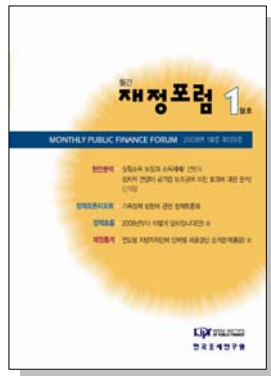
- 1) 2007년도 조세지출 전망
- 2)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160조 8,003억원 편성
- 3) 2008년 경제전망
- 4)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 5) 2007년 10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6)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영과정별 성과향상 유도에 중점
- 7)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경영을 확산

5. 재정통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 순계
분석(총괄) 외

6. 이런 의견 저런 생각

대선과 새해 예산안 외



2008년 1월호 (통권 제139호)

1. 권두칼럼

혜안이 필요한 올해 경제전망/
최흥식

2. 현안분석

- 1) 실질소득 보장과 소득세제/전병목
- 2) 정치적 연결이 공기업 보조금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민희철

3. 정책토론펀드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中, 성장 덕에 세수도 빠른 증가 외

5. 정책흐름

- 1) 200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
- 2) 2007년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3) 2008년 상반기중 예산의 62.4% 배정

4) 창의적인 업무 개선으로 7,637억 원 재정성과 제고

5) 2007년 현금영수증 발급액 50조원 돌파

6) 종합부동산세 신고결과(잠정치) 발표

7) 2008 지방세법령 개정 시행

6. 재정통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단체별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 외

7. 이슈 & 포커스

새 정부, 경제정책 두 토끼잡기 3대 딜레마 외



2008년 2월호
(통권 제140호)

1. 권두칼럼

부동산정책과 실용주의/전형수

2. 현안분석

- 1)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김우철
- 2) 기업의 사회공헌 현황과 시사점/손원익
- 3) 성 인지 예산의 성과관리방안/박노욱

3.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中 투자기업, 10년 안 돼 청산뎌 감면받은 세금 토해내야 외

4. 정책흐름

- 1) 2007년 국세징수 실적
- 2)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3) 2007년 12월 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4) 2008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 수립

5) 정부 일자리사업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6) 중국투자기업 세무 청산,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7) 소득조적을 통한 세금탈루행위 엄정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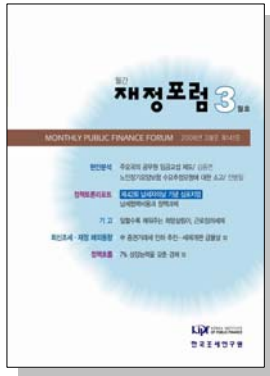
8) 자동차세 세율규간 축소 및 세율인하

5. 재정통계

조세체계의 변천 외

7. 이슈 & 포커스

‘법인세 5% 인하’ 실효성 논란 외



2008년 3월호
(통권 제141호)

1. 권두칼럼

조세제도 개혁의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하다/안종범

2. 현안분석

- 1) 주요국의 공무원 임금교섭 제도/김중면
-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추정모형에 대한 소고/진병힐

3. 정책토론포트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

4. 기고

일할수록 채워주는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

5.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中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세재개편 급물살 외

6. 정책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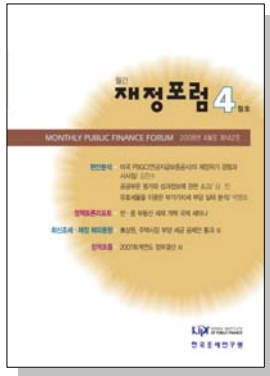
- 1)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 2) 예산 10% 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을 적극 지원
- 3)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도입 관련
- 4)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상 조치 마무리
- 5)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 6) 「국가회계법」 시행을 위한 후속업무 본격 추진
- 7)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 8)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출범

7. 재정통계

국세·지방세 비중 추이 외

8. 이슈 & 포커스

국내기업 조세 역차별 없앤다 외



2008년 4월호
(통권 제142호)

1. 권두칼럼

공공부문 개혁이 성공하려면/오연천

2. 현안분석

- 1) 미국 PBGC(연금지급보증공사)의 재정위기 경험과 시사점/김진수
- 2) 공공부문 평가와 성과정보에 관한 소고/김진
- 3) 유효세율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 분석/박명호

3. 정책토론포트

한·중 부동산 세제 개혁 국제 세미나

4.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美상원, 주택시장 부양 세금 공제안 통과 외

5. 정책흐름

- 1)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 2) 2008년 OECD 통계연보(FackBook) 발간
- 3)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
- 4) '08년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시장 접근물량 증량
- 5)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중소기업 애로해소 방안
- 6) 국세행정 성과, 국민이 평가

6. 재정통계

IMF 체계에 의한 세수 및 구성비(통합재정수지)

7. 이슈 & 포커스

근로자가구 10% “일해도 빈곤층” 외



2008년 5월호
(통권 제143호)

1. 권두칼럼

바람직한 신정부의 세제개편 방향/
김성태

2. 현안분석

- 1) 자동차 관련 세제정책의 방향/
김승래
- 2) 주요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과 정책과제/
우석진 · 조진권

3. 정책토론포럼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4. 정책연구

- 1)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
증분석/박기백 · 박상원 · 손원익

- 2)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
구/박형수 외

- 3)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김정
훈 · 김현아

- 4)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김우철

- 5)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 · 김재진

5.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미국, 1억 3천만가구에 세금 환급 외

6. 정책흐름

- 1) '08. 1분기중(1~3월) 해외직접투자
동향

- 2) 제3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 개최

- 3) 선진 일류가 건설을 위한 향후 5
년간의 재정전략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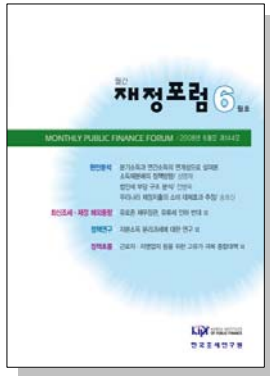
- 4) 200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
용계획안 작성 지침
- 5)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과 정
책적 시사점
-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7) 조세감면제도의 대폭 정비
- 8) 우리 지역 살림살이, 한눈에 확인

8. 재정통계

내국세 납세 인원 외

7. 이슈 & 포커스

재정부 법인세는 낮춰도...소득세 인
하 고려 안 해 외



2008년 6월호
(통권 제144호)

1. 권두칼럼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민영화만이 해법인가?/김동진

2. 현안분석

- 1) 분기소득과 연간소득의 연계성으로 살펴본 소득재분배의 정책방향/성명재
- 2) 법인세 부담 구조 분석/전병목
- 3)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소비 대체효과 추정/송호신

3. 정책연구

- 1)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안중석 · 전병목
- 2) 출산율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 · 재정정책/우석진 · 민희철

3)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노영훈

4)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원종학 · 성명재

5)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김승래 · 김우철

6)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

7) 보건 · 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김종면 · 김우철

8)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김형준 · 박명호

4. 최신 조세 · 재정 해외동향

유로존 재무장관, 유류세 인하 반대외

5. 정책흐름

- 1)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정책
- 2) '08년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안)
- 3)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
- 4)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폐지를 2008. 6. 1. 시행함
- 5) IMF와의 조세개혁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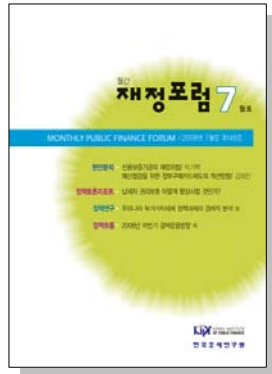
- 6) 2007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
- 7) 국세청 홈택스 방문자 2억명 돌파
- 8) 7월 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6. 재정통계

조세범칙 조사 실적 외

7. 이슈 & 포커스

국민연금 등 공적지출, 5년새 54.4% ↑ 외



2008년 7월호
(통권 제145호)

1. 권두칼럼

개혁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이만우

2. 현안분석

- 1) 신용보증기금의 재정위험/박기백
- 2) 예산절감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제도의 개선방향/김재진

3. 정책연구

납세자 권리보호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4. 정책연구

-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김승래 · 박명호 · 흥범교
- 2) 보건·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김종면 · 김우철

- 3)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손원익 · 박태규

5. 최신 조세·재정 해외동향

러시아 등 식량수출 규제 완화 외

6. 정책흐름

- 1)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 2) 경제안정 종합대책: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 3)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보도 관련 입장
- 4) 6월 및 08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 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6) 신용카드전표 보관의무 폐지 및

공제신청 간소화

- 7) 지방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빠
른 곳은 7월 1일부터 감면
- 8) 행안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중
산·서민층 유류비 지원 및 서비
스 산업 활성화 도모

7. 재정통계

연도별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외

8. 이슈 & 포커스

〈하반기 경제운용〉 소득세율 1%p
인하되나 외

발간도서목록

1993~2008

.....
연구총서

.....
연구보고서

.....
영문연구보고서

.....
정책보고서

.....
연구논문집

.....
정책연구

.....
재정연구

.....
재정포럼

.....
기타보고서

.....
세법연구

www.kipf.re.kr

| 연구총서 |

- KTI 금융모형: 금융·거시 통합모형
최장봉·이인표 1995. 2 값 9,000원
-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I)
최 광·임주영(편) 1997. 9 값 10,000원
-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II)
최 광·임주영(편) 1997. 9 값 13,000원
-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III)
최 광·임주영(편) 1997. 9 값 13,000원
-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IV)
최 광·임주영(편) 1997. 9 값 13,000원
-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I)
임주영(편) B5변형 365면 1998. 12 값 12,000원
-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II)
임주영(편) 1998. 12 값 10,000원
-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연구(III)
임주영(편) 1998. 12 값 11,000원

| 연구보고서 |

- 93-01 • 조세체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손광락 1993. 9 값 5,100원
- 93-02 • 소비세 부담 분포와 고세율 상품시장의 정상화에 관한 연구
성명재 1993. 10 값 5,500원
- 93-03 •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최명근 1993. 10 값 4,000원
- 93-04 •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윤건영·임주영 1993. 10 값 6,100원
- 93-05 • 토지세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이성욱·한상국·최명근 1993. 11 값 6,500원

- 93-06 • 독일통일 3년에 대한 경제적 평가
김유찬 1993. 11 값 6,000원
 - 93-07 • 금융선물거래의 도입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분석
최흥식·홍범교 1993. 12 값 7,000원
 - 93-08 • 개별소비세제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성명재·김진수 1993. 12 값 8,500원
 - 93-09 • 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효과분석
나성린·현진권 1993. 12 값 6,500원
 - 93-10 • 공동세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수 1993. 12 값 7,200원
 - 93-11 • 대만의 환율운동과 수출경쟁력
김종만 1993. 12 값 6,000원
 - 94-01 • 자본거래 자유화에 따른 효율적인 통화 및 자본유출입 관리
최장봉 1994. 2 값 5,500원
 - 94-02 •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과 적정조세부담률의 모색
김명숙 1994. 4 값 2,500원
 - 94-03 •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세율구조의 개편방향
김진수·안종석 1994. 5 값 4,500원
 - 94-04 • 세수전망과 세수추계의 개선방향
성명재·현진권 1994. 6 값 7,100원
 - 94-05 •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와 과세합리화 방안
최명근 1994. 7 값 7,000원
 - 94-06 • 감가상각의 현황과 정책방향
현진권 1994. 10 값 9,500원
 - 94-07 • 국세통칙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이철송 1994. 11 값 6,000원
 - 94-08 •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곽태원 1994. 12 값 4,500원
 - 94-09 • 환율운동과 수출경쟁력
김종만 1994. 12 값 9,900원
-

-
- 94-10 •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의 현황 및 개편방안
김유찬 1994. 12 값 4,000원
 - 94-11 • 금융실명제 실시 1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안중범 외 1994. 12 값 9,000원
 - 94-12 • 조세정책이 대내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안중석 1994. 12 값 3,000원
 - 95-01 • 담배소비세제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김진수 · 성명재 · 박정수 · 이성욱 1995. 2 값 11,000원
 - 95-02 • 금융환경 변화와 은행 · 기업간 관계의 발전방향
안중길 1995. 5 값 6,000원
 - 95-03 •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김종만 1995. 12 값 7,000원
 - 95-04 • 자산재평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향
현진권 1995. 12 값 4,000원
 - 95-05 • 세수추계모형과 세수전망
성명재 1995. 12 값 5,000원
 - 95-06 • 재정정책 기조의 측정 및 운용에 관한 연구
이창용 · 조윤제 1995. 12 값 3,000원
 - 96-01 •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
김종만 1996. 4 값 6,000원
 - 96-02 • 교육재정의 구조와 자원확충방안
박정수 · 안중석 1996. 4 값 7,000원
 - 96-03 • 기업간신용과 생산자유통금융의 현황 및 정책과제
이기영 1996. 5 값 5,000원
 - 96-04 • 유형고정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 추정
현진권 1996. 8 값 5,500원
 - 96-05 •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개편방향
김종만 1996. 10 값 7,000원
 - 96-06 • 상속 · 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한상국 · 배준호 · 이광재 1996. 12 값 16,000원
-

- 96-07 • 기업의 차입과 세제
손원익 1996. 12 값 5,000원
 - 96-08 • 한국의 분기별 거시경제모형: KIPF96Q
박종규 1996. 12 값 5,500원
 - 96-09 •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세제 및 관련제도 개선방향
손원익 외 1996. 12 값 6,500원
 - 96-10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자원배분에 관한 연구
안종석·박정수 1996. 12 값 8,000원
 - 96-11 •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
유시권 1996. 12 값 6,500원
 - 96-12 • 한국의 토지세제
노영훈·이성욱·이진순 1996. 12 값 6,000원
 - 97-01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자원조정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를 중심으로
박정수 1997. 3 값 6,000원
 - 97-02 •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관계
김건우 1997. 3 값 4,000원
 - 97-03 • 단위근 검정과 세수추계
성명재 1997. 3 값 6,000원
 - 97-04 • 기초과세자료 산출체계 확립방안
장 춘 1997. 3 값 11,000원
 - 97-05 • 근로소득세 세수추계와 세수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성명재 1997. 4 값 5,000원
 - 97-06 • 한국의 저축률 추이에 관한 연구
박대근·이창용 1997. 5 값 4,000원
 - 97-07 • 조세정책과 외국자본 유입의 형태
전주성 1997. 4 값 4,000원
 - 97-08 •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후생분석
전영준 1997. 4 값 4,000원
-

-
- 97-09 • 외환 및 자본자유화가 국내금리에 미치는 영향
김종만 1997. 5 값 5,000원
 - 97-10 •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분석과 석유류 과세정책의 개선방향
성명재 1997. 7 값 7,000원
 - 97-11 • 연구개발과 조세정책
손원익 1997. 10 값 5,000원
 - 97-12 • 우리나라 가산세 관련 제도의 합리화
손광락 1997. 8 값 4,000원
 - 97-13 •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개편방안
장근호·김진수 1997. 11 값 9,000원
 - 97-14 • 우리나라 주세제도의 정책과제와 개편방향
성명재 1997. 11 값 5,000원
 - 97-15 • 건물분 재산세의 개편방안 연구
노영훈 1997. 12 값 6,000원
 - 97-16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전영준·한도숙 1997. 12 값 7,000원
 - 97-17 • 열린 시대의 관세율정책: 수입구조의 변화와 우리나라 관세율체계의 평가
장근호 1997. 12 값 7,000원
 - 98-01 • 한국의 산업별·자산별 자본소득 추계(1954~1996)
표학길 1998. 6 값 7,000원
 - 98-02 •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성명재·전영준 1998. 5 값 6,000원
 - 98-03 • 현행 세법상 주식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은상·이준규 1998. 12 값 4,000원
 - 98-04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국중호 1998. 12 값 4,000원
 - 98-05 • 일반균형계산모형에 의한 소비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분석
안석환 외 1998. 12 값 4,000원
 - 98-06 •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손원익 외 1998. 12 값 9,000원
-

- 98-07 • 반덤핑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향
장근호 1998. 12 값 14,000원
 - 98-08 • 인적자본과 조세
이철인 1998. 12 값 6,000원
 - 98-09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분석
이용섭 1999. 5 값 7,000원
 - 99-01 • WTO 주세분쟁과 주세율 체계의 개편방향
성명재 · 장근호 1999. 12 값 12,000원
 - 99-02 • WTO 뉴라운드에 대비한 관세율정책의 현황과 개편방향
장근호 · 이명헌 1999. 12 값 10,000원
 - 99-03 • 경제위기 1년간 소득세 · 소비세 부담분포의 변화와 조세정책방향
성명재 · 전영준 1999. 12 값 10,000원
 - 99-04 • 세수추계 정밀도 제고를 위한 산업별 거시경제모형: KIPF99Q
박종규 1999. 12 값 8,000원
 - 99-05 • 적정 재정적자규모와 재정건전화 방안
박종규 1999. 12 값 4,000원
 - 00-01 • 혼합분포 추정을 통한 중심(core) 인플레이션을 측정
박종규 2000. 3 값 5,000원
 - 00-02 • 외환위기 발생 후 2년간의 소득 · 소비패턴 및 개인세 부담의 변화
분석
성명재 2000. 11 값 9,000원
 - 00-03 • 세수추계의 기법개발연구: 법인세, 관세의 세수추계 및 부가가치세
의 과세전환효과
박기백 · 이명헌 2000. 12 값 6,500원
 - 00-04 •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전영준 · 한도숙 2000. 12 값 8,000원
 - 00-05 • 고용관련 조세 · 재정정책 개선방안
이철인 · 전영준 2000. 12 값 9,000원
 - 00-06 • 저축률 하락과 재정정책
박종규 · 김진영 2000. 12 값 5,000원
-

-
- 00-07 • 도로교통의 외부비용과 적정혼잡과세
김정훈 2000. 12 값 5,000원
 - 00-08 • 국제적인 조세경쟁과 조세회피에 대응한 조세협력방안
한도숙 2000. 12 값 5,500원
 - 00-09 • 의료비 지출의 장기예측
김종면 2000. 12 값 8,500원
 - 00-10 • 뉴 라운드 대비 관세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관세율 변화 파급효과분석을 위한 모형 개발
이명현·정재호 2000. 12 값 5,000원
 - 00-11 • 장기 거시 - 재정 모형(KIPF00A): 공적자금의 재정 수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
박종규 2000. 12 값 5,000원
 - 00-12 • 중기재정전망과 정책방향(2001~2005)
박종규·박기백·성명재·전영준 2000. 12 값 5,500원
 - 01-01 •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성명재 2001. 11 값 8,000원
 - 01-02 • 고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개선 방안
이철인 2001. 11 값 10,000원
 - 01-03 •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현진권·박창균 2001. 12 값 7,000원
 - 01-04 • 우리나라 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연구
박기백 2001. 12 값 7,000원
 - 01-05 •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김진영 2001. 12 값 7,000원
 - 01-06 • 관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소득계층별 후생효과를 중심으로
이명현·성명재 2001. 12 값 6,000원
 - 01-07 • 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사회보장예산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1차연도 과제
전영준·김종면 2001. 12 값 6,000원
 - 01-08 •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와 조세정책에 대한 함의
김진영·박창균 2001. 12 값 6,000원
-

- 01-09 •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김정훈 2001. 12. 값 6,000원
 - 02-01 •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성명재 2002. 6. 23. 값 7,000원
 - 02-02 •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전병목 2002. 12. 31. 값 7,000원
 - 02-03 • 세수추계 정밀도 제고를 위한 제도부문별 국민계정모형: KEFM02
박형수 2002. 12. 13. 값 6,000원
 - 02-04 •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연구
박기백·박형수 2002. 12. 31. 값 7,000원
 - 02-05 • 장기재정에 대한 건강보험의 잠재부담 분석
김종면 2002. 12. 31. 값 5,000원
 - 02-06 • 조세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외부불경제 유발 재화의 소비세율 인상효과분석
이명헌·성명재 2002. 12. 30. 값 6,000원
 - 02-07 • 지속가능발전과 최적 환경세에 대한 연구
권오성 2002. 12. 30. 값 6,000원
 - 03-01 •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을 위한 연구: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중기재정 전망 및 정책과제
성명재·박기백·김현아 2003. 8. 31. 값 8,000원
 - 03-02 • 장기인력수급추이에 따른 소득세원의 변화
김종면·성명재 2003. 12. 31. 값 9,000원
 - 03-03 •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전병목·원중학 2003. 12. 31. 값 7,000원
 - 03-04 •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성명재·박노욱 2003. 12. 31. 값 11,000원
 - 03-05 •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 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방안
김진수·박형수·안중석 2003. 12. 31. 값 7,000원
 - 03-06 • 국제조세회피: 행태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안중석·최준욱 2003. 12. 31. 값 6,000원
-

-
- 03-07 • 환경세가 산업 및 무역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권오성 · 강만옥 2003. 12. 31 값 9,000원
 - 03-08 • 인구구조의 변화와 조세 · 재정정책: 조세정책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최준욱 · 전병목 2003. 12. 31 값 8,000원
 - 03-09 • 지방자치단체 순재정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김정훈 2003. 12. 31 값 6,000원
 - 03-10 • 이전기과세제도의 국제적 추이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노영훈 2003. 12. 31 값 7,000원
 - 04-01 •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박기백 · 김 진 · 전병목 2004. 12 값 6,000원
 - 04-02 • 사회보장정책의 장기 재정지출 수요 추정과 정책방향
김종면 · 성명재 2004. 12 값 9,000원
 - 04-03 • 부문별 ·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성명재 · 김종면 2004. 12 값 9,000원
 - 04-04 • 여성인력공급과 조세 · 재정정책: 자녀보육비용을 중심으로
김현숙 · 원종학 2004. 12 값 9,000원
 - 04-05 •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및 개편방안
안중석 2004. 12 값 7,000원
 - 04-06 • 지방공공재의 비용부담 원칙에 관한 연구 - 기반시설연동제를 중심으로
김현아 · 박상원 · 김형준 2004. 12 값 7,000원
 - 04-07 • 지방선거 이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변화
박노욱 2004. 12 값 6,000원
 - 04-08 • 법인세 부담 연구 -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
박기백 · 김 진 2004. 12 값 6,000원
 - 04-09 •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 · 재정정책(II): 고령화 대응 조세 ·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노영훈 2004. 12 값 7,000원
 - 04-10 • 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
김형준 · 현진권 2004. 12 값 6,000원
-

- 04-11 • 토지세 강화정책의 경제적 효과: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노영훈 2004. 12 값 6,000원
 - 05-01 •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성명재 2005. 11 값 15,000원
 - 05-02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실증분석 -
김종면·성명재 2005. 12 값 7,000원
 - 05-03 •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 - 청년실업을 중심으로
원종학·김종면·김형준 2005. 12 값 8,000원
 - 05-04 • 경쟁과 정부조달의 효율성 연구 -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박상원·김진 2005. 12 값 6,000원
 - 05-05 • 조세·재정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병목·장용성 2005. 12 값 6,000원
 - 05-06 •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노영훈·김현숙 2005. 12 값 8,000원
 - 05-07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안종석 2005. 12 값 7,000원
 - 05-08 •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우철 2005. 12 값 7,000원
 - 05-09 • 재정지출의 분야별 자원배분에 관한 연구
최준욱·류덕현·박형수 2005. 12 값 12,000원
 - 05-10 • 취득·등록세의 후생효과
김정훈 2005. 12 값 6,000원
 - 06-01 • 사회분야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 현물급여 및 간접세 포함 -
박기백·성명재·김종면·김진 2006. 12
 - 06-02 •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소득·부동산자산 결합분포
및 관련 세부담 분포분석에 관한 연구
성명재·김현숙 2006. 12
 - 06-03 •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출산율 결정요인에
-

-
- 대한 경제학적 분석
김현숙 · 류덕현 · 민희철 2006. 12
- 06-04 • 기업인수 · 합병(M&A)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 · 이준규 2006. 12
- 06-05 •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편연구
노영훈 2006. 12
- 06-06 • 여성노동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개편방안 연구
김현숙 · 성명재 2006. 12
- 06-07 • 과세소득탄력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2006. 12
- 06-08 • WTO DDA 협상과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
정재호 · 박순찬 2006. 12
- 06-09 •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안중석 · 박노욱 · 정재호 · 김진영 2006. 12
- 06-10 • 소득재분배정책을 위한 동등화 지수 연구
김우철 · 민희철 · 박상원 2006. 12
- 06-11 •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안중석 · 홍범교 2006. 12
- 06-12 •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박형수 · 류덕현 2006. 12
- 06-13 •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수 · 류덕현 2006. 12
- 06-14 • 재정의 유지 가능성과 세입 · 세출의 인과관계 검정
박기백 · 김우철 2006. 12
- 06-15 • 상속 · 증여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
김진 · 원중학 2006. 12
- 06-16 • 한국의 조세 · 재정정책 평가 모형: 조세의 일반균형 귀착효과
김승래 2006. 12
- 06-17 •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 민사채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
김완석 · 한상국 · 박훈 2006. 12
-

- 06-18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발전방향
김정훈·김현아 2006. 12
 - 06-19 • 평생세부담 분석을 통한 조세의 재분배 기능 고찰
최준욱·김우철·박명호 2006. 12
 - 07-01 • 세무조사제도 개혁방안
오 윤·박명호 2007. 9.
 - 07-02 • 목적세의 정치경제학적 모형과 실증분석
박기백·박상원·손원익 2007. 12
 - 07-03 • 출산율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우석진·민희철 2007. 12.
 - 07-04 •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박형수·박상원·박기백·김현아·이창용·이항용 2007. 12
 - 07-05 • 공격적 조세회피 (ATP)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안중석·안경봉·오윤 2007. 12
 - 07-06 •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조세, 재정,
보육·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민희철·우석진·김현숙·김혜원·류덕현·옥우석 2007. 12
 - 07-07 •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김정훈·김현아 2007. 12
 - 07-08 •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 기업의 세부담과 소득을 중심으로 -
김우철 2007. 12
 - 07-09 •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노영훈 2007. 12
 - 07-10 •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원종학·성명재 2007. 12
 - 07-11 •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DIT를 중심으로
안중석·전병목 2007. 12
 - 07-12 •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김재진 2007. 12
-

- 07-13 •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김승래 · 김우철 2007. 12
- 07-14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김승래 · 박명호 · 홍범교 2007. 12
- 07-15 • 보건 · 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김종면 · 김우철 2007. 12
- 07-16 •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김형준 · 박명호 2007. 12

| 영문연구보고서 |

- 96-01 • Land Taxation in Korea
Ro Young Hoon/1996. 12

| 정책보고서 |

- 93-01 • 통화의 간접관리수단으로서 통화안정증권의 역할
최장봉 1993. 9 값 4,300원
- 93-02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개선방향
유시권 · 임주영 1993. 10 값 4,900원
- 93-03 • 개발이익 환수 수단으로서의 양도소득세 합리화 방안
곽태원 1993. 10 값 5,300원
- 93-04 • 지방재정 수요의 변화와 지방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손광락 외 1993. 11 값 8,500원
- 94-01 • 정책금융제도의 현황, 효과분석 및 개선방향
이기영 1994. 1 값 5,500원
- 94-02 • 적정 통화지표의 선정
이인표 1994. 4 값 4,900원
- 94-03 • 금융자율화와 신금융상품의 개발
홍범교 1994. 4 값 5,000원

- 94-04 • 재산보유세의 귀착: 재산세의 소득분배효과에 대한 재고찰
김명숙 1994. 5 값 5,500원
 - 94-05 • 채권시장의 미시구조 개편방
최흥식 1994. 7 값 4,600원
 - 94-06 • 중앙·지방정부간 기능 및 재정책임의 재분배
박정수 1994. 8 값 6,100원
 - 94-07 • 취득과세형 상속세 전환에 관한 연구
한상국 1994. 10 값 5,700원
 - 94-08 • 스칸디나비아 3국의 조세제도 - 스웨덴을 중심으로
박노호 1994. 11 값 11,000원
 - 94-09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와 소득이전에 관한 분석
조윤제·안종석 1994. 12 값 5,500원
 - 95-01 •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향
조윤제·황현리 1995. 3 값 3,000원
 - 95-02 •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의 개선방향
이기영 1995. 5 값 2,500원
 - 95-03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설정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김유찬 1995. 6 값 3,000원
 - 95-04 • 재정정책의 경기조정 기능
박종구 1995. 7 값 3,000원
 - 95-05 •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향
손원익 1995. 7 값 3,000원
 - 95-06 • 석유류 과세체계의 개선방향
성명재 1995. 9 값 3,000원
 - 95-07 • 사용료소득 과세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김유찬 1995. 12 값 4,000원
 - 96-01 • 예금보호제도의 도입방안과 외국사례 분석
최장봉·안종길·김기홍 1996. 4 값 12,000원
 - 96-02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방안
정영현·박정수 1996. 6 값 4,000원
-

-
- 96-03 • WTO체제 출범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
임주영 1996. 6 값 3,000원
 - 96-04 • 관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박상태 1996. 8 값 11,000원
 - 96-05 •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향
최흥식·김성룡 1996. 8 값 7,000원
 - 96-06 • 과소자본규제제도의 개편방향
김유찬 1996. 8 값 4,000원
 - 96-07 • 업종전문화시책의 현황, 평가 및 향후 금융지원정책의 방향
이기영 1996. 9 값 3,500원
 - 96-08 •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체계 정비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성명재 1996. 11 값 5,500원
 - 96-09 • 조세 관련자료 체계의 변천과 개선방향
현진권 1996. 12 값 6,000원
 - 96-10 •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향
김진수 1996. 12 값 4,500원
 - 96-11 • 외환 및 국제금융 관련 규제완화
김종만 1996. 12 값 4,000원
 - 96-12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제도의 개선방향
한도숙 1996. 12 값 6,000원
 - 96-13 •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유찬 1996. 12 값 4,000원
 - 97-01 •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현황과 정책과제
홍범교 1997. 4 값 4,000원
 - 97-02 • 기업합병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유찬 1997. 4 값 5,000원
 - 97-03 •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박상태 1997. 5 값 8,000원
 - 97-04 •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분석
안종석 1997. 6 값 4,000원
-

- 97-05 •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에 관한 연구
이기영 1997. 6 값 4,000원
 - 97-06 •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임주영 1997. 12 값 4,000원
 - 97-07 • 부동산실명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노영훈 1997. 7 값 5,000원
 - 97-08 • 중국의 재정제도와 당면과제
한상국 1997. 7 값 4,000원
 - 97-09 • 기업회계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향
유시권 · 이노창 · 유재권 · 오엽록 1997. 8 값 4,000원
 - 97-10 • 한 · 일 국세행정의 비교 · 평가
유시권 1997. 10 값 5,000원
 - 97-11 •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임주영 · 장근호 · 노영훈 1997. 9 값 5,000원
 - 97-12 • 금융시장의 국제적 통합과 우리의 대응
홍범교 1997. 11 값 4,000원
 - 97-13 • 對中투자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소고
한상국 1997. 12 값 4,000원
 - 97-14 •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및 정책시시점
안중석 1997. 12 값 4,000원
 - 97-15 • 기업의 기부행위와 조세정책방향
김진수 1997. 12 값 4,000원
 - 97-16 • 금융기관 합병에 관한 조세정책방향
김진수 외 1997. 12 값 4,000원
 - 97-17 • 접대비 관련세제의 정책방향
손원익 1997. 12 값 4,000원
 - 98-01 • 소득 · 소비 · 자산과세의 분류에 의한 한일 조세구조연구
국중호 1998. 3 값 5,000원
 - 98-02 • 자료포락분석법 및 그 변형기법을 통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측정
문춘걸 1998. 3 값 5,000원
-

-
- 98-03 •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김재진 · 홍용식 1998. 7 값 6,000원
 - 98-04 • 한국의 교육발전과 교육투자
윤건영 · 최영순 1998. 6 값 4,000원
 - 98-05 • 중앙정부 세출 및 보전수단의 거시경제적 효과
박종규 1998. 6 값 6,000원
 - 98-06 • 물가지수 연계채권 발행의 경제적 효과와 도입 타당성
이상섭 1998. 7 값 4,000원
 - 98-07 •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소비세 세수추계
성명재 1998. 12 값 6,000원
 - 98-08 • 전자상거래 시대의 조세정책
김유찬 · 홍범교 1998. 12 값 5,000원
 - 98-09 •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재정개혁과 세제개편
국중호 1998. 12 값 6,000원
 - 98-10 •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정책방향
김진수 1998. 12 값 5,000원
 - 98-11 • 외국제도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기업인수제도 및 기업인수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김유찬 1998. 12 값 5,000원
 - 98-12 • 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김재진 · 김진수 1998. 12 값 7,000원
 - 98-13 •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의 세대간 · 세대내 재분배 효과
전영준 1998. 12 값 4,000원
 - 98-14 • 기업분할과 조세정책방향
김진수 1998. 12 값 4,000원
 - 98-15 • 유가증권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및 과세방안
한상국 1998. 12 값 5,000원
 - 98-16 • 배우자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방안
한상국 1998. 12 값 4,000원
 - 99-01 • 예산제도의 개혁 -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박기백 · 최준욱 1999. 12 값 7,000원
-

- 99-02 • 자산유동화와 조세정책방향
이상섭 · 김진수 · 한상국 1999. 12 값 6,000원
 - 99-03 • 지주회사제도와 조세정책방향
김진수 1999. 12 값 6,000원
 - 99-04 • 특별소비세 부담분포 추정 및 과세체계 정비방안
성명재 1999. 12 값 9,000원
 - 99-05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세규모의 추정과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성명재 1999. 12 값 5,000원
 - 99-06 • 이자소득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전영준 · 이철인 1999. 12 값 4,000원
 - 99-07 • 지방교부세의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
김정훈 1999. 12 값 6,000원
 - 99-08 •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방향
노영훈 · 연태훈 · 홍범교 1999. 12 값 4,000원
 - 99-09 • 우리나라 재산관련 과세평가체계의 문제점과 전문성 제고방안
노영훈 · 장근호 1999. 12 값 13,000원
 - 00-01 • 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
손원익 2000. 12 값 6,000원
 - 00-02 •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김정훈 2000. 12 값 6,000원
 - 00-03 • 북구 국가들의 여성정책: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도숙 2000. 12 값 6,000원
 - 00-04 •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세행정의 변화
현진권 · 정재호 2000. 12 값 5,000원
 - 00-05 • 파트너쉽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 · 김재진 2000. 12 값 6,500원
 - 01-01 • 전자상거래와 조세: 국제적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홍범교 · 안종석 2001. 12 값 7,000원
 - 01-02 • 합병관련 기업회계와 과세제도의 개편방향
김진수 · 황국재 2001. 12 값 10,000원
-

-
- 01-03 •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정재호 2001. 12 값 8,000원
 - 01-04 •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의 지방재정 구조 변화 분석
안종석 2001. 12 값 6,000원
 - 01-05 • 체제전환국 조세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남북경협 및 경제통합 관련
조세·재정분야 기초연구(I)
최준욱·전택승·이명현·한상국 2001. 12 값 19,000원
 - 01-06 •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전영준 2001. 12 값 6,000원
 - 01-07 •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최준욱 2001. 12 값 7,000원
 - 02-01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김진수·이준규 2002. 9. 31 값 8,000원
 - 02-02 • 재정의 지방분권화: 남미국가들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와 시
사점
안종석 2002. 12. 18 값 9,000원
 - 02-03 • 체제전환국의 재정정책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남북경협 및 경제통합 관련 조세·재정분야 기초연구(II)
최준욱·이명현·전택승 2002. 12. 18 값 9,000원
 - 02-04 •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적 개선방향 - 세무절차의 민주화를 중심
으로 -
최명근 2002. 12. 31 값 10,000원
 - 02-05 • 의제배당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이준규·김진수 2002. 12. 31 값 6,000원
 - 02-06 •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재호·이명현 2002. 12. 31 값 8,000원
 - 02-07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 조세정책을 통한 근로유인 제고
방안
김재진·권오성 2002. 10. 30 값 11,000원
 - 02-08 •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김진수·김재진 2002.12. 31 값 14,000원
-

- 02-09 •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분석
손원익 2002. 12. 31 값 5,000원
 - 02-10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김정훈 2002. 12. 31
 - 02-11 • 개방경제하의 조세정책: 경제개방이 자본소득과세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조세정책 논의
최준욱 2002. 12. 31 값 6,000원
 - 02-12 •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노영훈 2002. 12. 31 값 6,000원
 - 03-01 • 체제전환기의 중국 조세정책과 북한에의 시사점
한상국 2003. 12. 31 값 11,000원
 - 03-02 •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행정의 정비
홍범교 2003. 12. 31 값 7,000원
 - 03-03 • 관세율 체계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비교와 일반균형모형의 응용
정재호 · 성명재 · 이명현 2003. 12. 31 값 11,000원
 - 03-04 •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박형수 · 박기백 2003. 12. 31 값 8,000원
 - 03-05 • 조세감면의 합리화 및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박기백 · 정재호 2003. 12. 31 값 8,000원
 - 03-06 • 지방소비 · 소득세제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김현아 2003. 12. 31 값 8,000원
 - 03-07 • 실지거래가격 신고에 따른 적정세율 추정 및 제도적 실행방안
노영훈 2003. 12. 31 값 6,000원
 - 03-08 •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에 관한 연구
김재진 2003. 12. 31 값 12,000원
 - 03-09 • 기금제도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전택승 2003. 12. 31 값 7,000원
 - 03-10 •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손원익 2003. 12. 31
 - 04-01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소득과세의 정책과제와 제도정비
홍범교 2004. 12 값 7,000원
-

-
- 04-02 • 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II)
-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박형수 · 최준욱 · 김 진 2004. 12 값 8,000원
 - 04-03 •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정재호 · 류덕현 2004. 12 값 7,000원
 - 04-04 • 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정비방안: 운송부문을 중심으로
권오성 · 하현구 2004. 12 값 8,000원
 - 04-05 • 배당소득과세제도의 개편방향
- 배당소득의 이중과세조정방안을 중심으로 -
김진수 2004. 12 값 8,000원
 - 04-06 •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손원익 · 정재호 · 김형준 · 김상현 2004. 12 값 18,000원
 - 05-01 • 미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 - 파생금융상품을 중심으로
홍범교 2005. 12 값 6,000원
 - 05-02 •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가능성
- 영국 및 미국 기업집단세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준규 · 김진수 2005. 12 값 7,000원
 - 05-03 •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회피와 그 대응방안
노영훈 2005. 12 값 5,000원
 - 05-04 •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상국 · 박 훈 2005. 12 값 7,000원
 - 05-05 • 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특례에 대한 연구
안종석 · 권오성 2005. 12 값 7,000원
 - 05-06 • 특혜관세제도 확대와 경제적 효과 연구
정재호 · 이명현 2005. 12 값 8,000원
 - 05-07 • 공공부문의 성과평가와경제적 유인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박노욱 2005. 12 값 6,000원
 - 05-08 • 적정세무조사에 대한 연구
김형준 2005. 12 값 6,000원
-

- 05-09 • 21세기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의 방향(Ⅰ)
- 재정부문 -
박기백·최준욱·박형수·류덕현 2005. 12 값 8,000원
- 05-10 • 21세기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의 방향(Ⅰ)
- 조세부문 -
손원익·전병목·박기백·최준욱·박형수·김형준·박명호 2005. 12 값 10,000원

| 연구논문집 |

- 93-01 •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정립을 위한 재정·금융정책
최 광 외 1993. 12 값 9,000원
 - 94-01 •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재정·금융정책의 방향
조윤제 외 1994. 11 값 7,000원
 - 95-01 • 광복 후 50년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방향
제1권 조세정책 : 이우택 외 1995. 12 값 7,000원
제2권 금융정책 : 조윤제 외 1995. 12 값 6,000원
 - 96-01 •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현진권(편) 1996. 4 값 11,000원
 - 97-01 •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
정영현 외 1997. 12 값 5,000원
 - 98-01 •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현진권 편 1998. 12 값 8,000원
 - 98-02 • 경제위기와 조세 및 재정운영방향
1998. 12 값 5,000원
 - 99-01 • 조세개혁의 방향 모색: 한국과 미국
1999. 12 값 4,000원
 - 99-02 • 조세개혁의 효율성 제고
현진권 편 1999. 12 값 7,000원
-

| 정책연구 |

- 98-01 • 자본자유화 이후 환율변동과 수출의 가격경쟁력
김종만 1998. 3 값 3,000원
- 98-02 • VAT의 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한 평가와 조정의 기본방향
김유찬 1998. 12 값 3,000원

| 재정연구 | 제5권 제1호부터 『재정금융연구』를 『재정연구』로 改題

- 『재정금융연구』 제1권 제1호(통권 제1호) 1994. 12 값 8,000원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부가가치세 과표양성화에 관한 분석 / 안중범 · 정영현
 - 토지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이성욱
 - 자본소득과세에 대한 세제조화의 이론적 타당성 / 한도숙
 - 시장가격자료를 사용한 운수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률 측정 / 현진권
 - 정부계층간 기능분배의 적정구조 분석 / 박정수
 - 우리나라 실질 설비투자의 장기추세 추정 / 박종규
 - 수출가격변동과 환율운동 지표 / 김종만

- 『재정금융연구』 제2권 제1호(통권 제2호) 1995. 6 값 7,000원
-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유인 효과 / 김유찬
 - 다주택보유 재산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 측정 및 예상효과 분석 / 노영훈
 - 지방교부세 분배방식에 관한 연구 / 안중석
 - 수출금융의 可用量과 금리보조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 이기영
 - 외환 및 자본 자유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 김종만
 - 證據金의 시장안정화 기능과 적정수준 / 최흥식
 - 우리나라의 통화충격지표 / 이인표

- 『재정금융연구』 제2권 제2호(통권 제3호) 1995. 12 값 6,500원
- 遺産行動이 減稅정책의 實物효과에 미치는 영향 / 배준호
 - 均等犧牲假說에 따른 개인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 임주영
 - 지방세 구조에 관한 실증연구: 미국 州稅를 중심으로 / 장근호
 - 자동차 관련 세법개정의 효과: 소득 계층별 세부담 분석을 중심으로 / 전영준
 - 거시금융모형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의 파급효과 분석 / 최장봉
 - 先物시장에서의 조작과 감독: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 홍범교
 - 서평: 「Regulation and Economic Analysis: A Critique over Two Centuries」(by Richard L. Gordon, 1994) / 이준구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1호(통권 제4호) 1996. 6 값 6,500원

- 우리나라 도시기구의 계층별·연령별 소비세 부담 분포에 관한 연구 / 성명재
- 정부지출과 국민소득간의 관계: 한국의 경우 / 박완규
- 개인연금의 과세유형이 국민저축과 정부채무에 미치는 효과 / 배준호
- 재고자산에 대한 세제가 생산에 미치는 효과: 미국의 경우 / 손원익
- 조세정책의 변화가 담배수요에 미치는 효과분석 / 안중석
-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개편논의와 전망 / 김종만
- 서평: 『The Economic Foundations of Government』(by Randall G. Holcombe, 1994) / 소병희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2호(통권 제5호) 1996. 12 값 7,000원

- 개방경제하에서 조세정책이 투자 및 저축에 미치는 효과분석 / 안중석
-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 양준모
- 加重平均値 사회적 할인율의 문제 / 옥동석
-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간신용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 이기영
- 석유류 과세의 소득계층별 귀착 분석 / 최준욱
- 상속세 배우자공제제도의 개편방향 검토 / 한상국, 배준호
- 書評: 『Public Economics: Selected Papers by William Vickery』(ed. by Richard Arnott and others, 1994) / 노영훈

『재정금융연구』 제4권 제1호(통권 제6호) 1997. 8 값 9,000원

- 기업 기부행위의 동기에 관한 연구 / 김진수
-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및 재분배효과분석 / 박정수
- 메뉴비용과 가격충격분포 / 박종규
- 메뉴비용과 산업별 요소가격충격하에서의 독점적 경쟁기업의 가격결정 / 박종규
- 환율변동이 수출입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非對稱性 / 김종만
-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분석 / 진병용
- 인플레이션과 상대가격변동성 / 황익각, 현성민
- 서평: 『중앙은행론』(정운찬 著, 1995) / 정진호

『재정금융연구』 제4권 제2호(통권 제7호) 1997. 12 값 7,000원

- 근로소득세 특별공제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을 위한 보험료 및 의료비 지출분포의 추정 / 성명재
 - 교육서비스와 소득분포 평등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 국중호
 -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행태분석: 기간간 최적모형을 중심으로 / 김규한, 이명훈
 - 우리나라 회사채 유통수익률의 결정요인 분석 / 김종만
 - 주기변동성의 추정과 활용 / 이준행, 최흥식
-

『재정연구』 제5권 제1호(통권 제8호) 1998. 8 값 7,000원

- 공·사교육비와 조세 / 박기백
- 조세정책 평가모형에서 유산이 주는 경제학적 함의 / 김재진
- 인적투자과 물적 이전에서 나타나는 과세효과 / 국중호
- 경제체제 전환기의 신용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유인정책 / 한도숙
- 서평: Do Deficits Matter?(by Daniel Shaviro, 1997) / 이지순

『재정연구』 제5권 제2호(통권 제9호) 1998. 12 값 7,000원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이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분석 / 안종석
- 자본비용의 추정: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 윤종인
- 통화정책의 주가에 대한 효과분석 / 이상섭
-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축적과정에서의 유산의 역할 및 행태분석 / 배준호, 김진수
- 공공재의 수요와 불확실성 / 이철인

『재정연구』 제6권 제1호(통권 제10호) 1999. 8 값 6,000원

-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비용의 세대별 귀착 / 전영준
- 수직적 상품차별화된 산업에서의 공기업에 대한 분석 / 연태훈
- 외환위기 이후 재정정책 지속 가능 시한의 변화: 단순 시뮬레이션 분석 / 박종규
- 다국적기업들의 기업 내 자금흐름에 대한 이론적 분석 / 한도숙
- The Effects of Off-farm Work Experience and the Regional Labor Market Situation on Farmer's Exit and Off-farm Work Participation / 이명현

『재정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11호) 2000. 1 값 7,000원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감면 규모 추정 / 박기백
- 인구집적과 도시의 성장: 정태모형과 그 실증적 함의 / 김진영
- 한국수출상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사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거시경제적 요인 / 마재신
- 同次性, 실질잔고효과와 고전파적 이분법 / 장세진
- The Long-run Burden of Health Care Costs on Public Finance: An Alternative Forecasting Approach / 김종면

『재정연구』 제7권 제1호(통권 제12호) 2000. 7 값 7,000원

- 자유무역협정하에서의 최적관세: 小國과 大國의 경우 / 정재호
- 고정투자에 대한 재무제약가설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윤종인
- 지방재정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 / 안종석

202 연구결과 요약집

- 우리나라의 저축률 하락: 거시적 구조 변화와 미시적 원인 / 박종규, 김진영
- 서평: Cybertaxation: The Taxation of E-Commerce / 홍범교

『재정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3호) 2001. 4 값 7,000원

- 세법개정효과 및 소득·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세부담 효과의 분리 추정에 관한 연구 / 성명재
-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유인 - Grossman & Helpman 모형의 일반화 / 정재호
- 통화옵션에 나타난 외환 시장의 변동성 추정 / 박창균
-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licy Analysis for the Social Optimum / 권오성
- 서평: 20세기 빈부격차를 설명하는 비경제학자들의 견해 / 김진영

『재정연구』 제8권 제1호(통권 제14호) 2001. 12 값 5,000원

- ACE제도의 이론적 의미와 자본비용 효과 / 곽태원
- 로비활동하의 간접세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인호
- 지방세수추계 모형 및 요인분석 / 김현아
- Neighborhood Structure and the Viability of Cooperation / 전택승, Rajiv Sethi

『재정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15호) 2002. 7 값 5,000원

- 예비비제도는 투명한가? / 김상현·현진권
-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요함수와 지방세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지방세계계의 구축 / 국중호
- 망외부성하에서의 제품 호환성이 가격 및 기술혁신 유인에 미치는 효과 / 김정유
- Optimal Control of Pollution in the Uzawa-Lucas Model of Endogenous Growth / 권오성
- 영문요약

『재정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16호) 2002. 12 값 5,000원

- 예비비제도는 투명한가? / 김상현·현진권
-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요함수와 지방세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지방세계계의 구축 / 국중호
- 망외부성하에서의 제품 호환성이 가격 및 기술혁신 유인에 미치는 효과 / 김정유
- Optimal Control of Pollution in the Uzawa-Lucas Model of Endogenous Growth / 권오성
- 영문요약

『재정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17호) 2003. 7 값 5,000원

- 1990년대 전·후반기의 소득세 부담률 변화의 요인별 효과 분리추정에 관한 연구 / 성명재
 - 형평성 요인별 분석을 통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 현진권, 임병인
 -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에 관한 연구 / 김정완
-

- Interest Group, Government Structure and Public Expenditure / 김상현

『재정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18) 2003. 12 값 5,000원

- 직접세와 간접세 인하의 지역경제 성장효과 비교: CGE모형의 정태 동태분석 / 지해명
-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모형의 분석 / 유승훈
- 國際的 租稅 非中立性 測定에 관한 研究 - 우리나라와 G7 國家의 個人 포트폴리오 投資를 중심으로 / 이경근

『재정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19) 2004. 8 값 5,000원

- 한계세율의 측정방법에 관한 실증연구 / 노현섭 · 서갑수 · 서종길
- 레버리지가 기업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System-GMM을 이용한 상장제조기업 패널 분석 / 조삼용 · 신선우 · 이훈현
- 무선데이터 통신 과금체계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 김정유
-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of Nonparametric Structural Models by Instrumental Variables Method / 김우철

| 재정포럼 |

『재정포럼』 1996. 7월호부터 계속

| 기타보고서 |

- 금융실명제와 국민경제
안종범(편) 1993. 10 값 4,000원
- 새로운 경제질서와 생산성 향상
장현준 1994. 10 값 6,000원
- 개정세법 총람(Ⅰ)(Ⅱ)(Ⅲ)
1994. 10 값 100,000원
- 재정 · 금융정책과 자유주의 사상
이근식 1994. 12 값 8,500원
-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
한상국 1995. 6 값 6,000원
- 대만의 재정과 조세제도
한상국 1995. 12 값 6,000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이인표·안종범·최흥식 1995. 12 값 6,5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
임주영 외 1996. 11 값 5,500원
 - 조세범처벌법의 개선방향
이철송 1996. 12 값 6,000원
 - 조세혜택으로 인한 내재적 조세의 실증연구
이준규·이태희 1997. 3 값 4,000원
 - 전자상거래의 조세정책적 함의
정영현·심재진(역) 1997. 4 값 4,000원
 - 세무자문을 위한 전문가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
이건창 1997. 6 값 6,000원
 - 우리나라와 BIS, 미국 및 일본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최장봉·가경수 1997. 6 값 5,000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영·김종만·김관영 1997. 9 값 7,000원
 - 한국의 공공부문과 통합재정 범위
옥동석 1997. 10 값 5,000원
 - 캐나다의 재정
박기백 1997. 10 값 6,000원
 - 독일의 재정
김유찬 1997. 11 값 6,000원
 - 영국의 재정
최준욱 1997. 11 값 6,000원
 -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현진권 편 1997. 11 값 13,000원
 - 조세정책50년 제1권~제6권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제2권: 총괄자료집, 제3권: 소득세자료집, 제4권: 법인세자료집, 제5권: 소비과세자료집, 제6권: 재산과세자료집〉
최광·현진권 편 1997. 12 전 6권 1질(CD 포함) 25만원, 각권 4만원
-

-
- 글로벌화, 통일 그리고 조세정책(Globalization, Unification and Tax Policy)
김유찬 외 1997. 12 값 8,000원
 - 조세정책에 대한 OECD의 논의와 대응방향
김유찬 외 1998. 2 값 11,000원
 - 과세소득 산정과 기업회계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우택 1998. 3 값 9,000
 - 산재보험제도 운용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기영 외 1998. 3 값 5,000원
 - 일정한 조세의 조세정책
차병권 1998. 3 값 9,000원
 -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대도시경제의 내발적 발전과 자치단체 재정개혁 전략
황한식 외 1998. 7 값 6,000원
 - 미국과 캐나다의 세수추계
성명재 1998. 11 값 6,000원
 - 지방재정 구조분석 - 전남·전북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광수·김일태 1998. 12 값 4,000원
 - 주류 유통·판매 관련 규제정책의 국제비교
성명재 1999. 12 값 4,000원
 - 디지털 경제의 등장과 파급효과
노영훈·심재진 역 1999. 12 값 4,000원
 - 주요국의 기업과세제도
손원익 1999. 12 값 5,000원
 -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현진권(편) 2000. 4 값 13,000원
 - OECD 국가의 최근 조세개혁 논의 동향
2002. 1 값 8,000원
 - 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최광 2002. 1 값 8,000원
 - 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
최명근 2002. 3 값 4,000원
-

- 일본의 법인과세 개혁과 정책시시점
국중호 · 한상국 2002. 10 값 5,000원
 - 한일 지방세 구조와 세부담 특성비교
국중호 2002. 12 값 6,000원
 - 조세사면 - 한국에서의 정책적 유용성 -
최병철 2002. 12 값 4,000원
 - 학교시스템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교육 행 · 재정체제의 개혁
- 탈통제와 진정한 지방자치의 확립 -
이진순 2002. 12 값 6,000원
 - 예산사업의 사업평가 연구
박기백 · 원윤희 · 전택승 · 황수철 · 안종범 · 임주영 2002. 12 값 15,000원
 - 인적자원의 장기추이 분석과 복지재정 잠재부담 전망
김진영 · 안주엽 · 김종면 · 전영준
 - 북한 재정경제의 현황과 재정개혁의 방향
이일영 · 김연철 · 양문수 · 이건범 · 이남주 · 전병유 2003. 5 값 7,000원
 - 재정개혁의 목표와 과제
옥동석 2003. 8 값 9,000원
 -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이준규 2003. 9 값 10,000원
 - Tax Equity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정광수 2003. 11
 - 전설의 10년: 1990년대 미국경제 성공의 교훈
김교식 2003. 11
 -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시스템에 관한 연구
전승훈 2003. 12 값 7,000원
 - 일본의 연결납세제도
배준호 2003. 12 값 7,000원
 - 예산사업의 사업평가 연구
김상현 · 이영 · 김진영 · 민동기 · 사공 용 2003. 12 값 12,000원
 - 고령화 현상에 수반되는 사회경제 변수 및 의료지출의 변화
김종면 · 이철희 · 전영준 2003. 12 값 8,000원
-

-
- 조세·재정정책 50년 증언 및 정책평가
이형구·전승훈(편) 2003. 12 값 150,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장근호 2004. 6 값 20,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 - 영국편
박정수 2004. 6 값 15,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국중호 2004. 6 값 15,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
안창남 2004. 6 값 13,000원
 -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김유찬 2004. 6 값 13,000원
 -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전택승 2004. 8 값 10,000원
 - 미국의 경제적 투명성에 대한 이해
전승훈 외 2004. 9 값 13,000원
 - 재정민주주의와 지출승인법
옥동석 외 2004. 12 값 9,000원
 - 성과관리와 사업평가 연구
박기백 외 2004. 12 값 23,000원
 - 법인소득과세의 이론과 현실 - 국내외의 연구성과 개관
곽태원 2005. 8 값 6,000원
 - 부동산세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이진순 2004. 8 값 5,000원
 - 소비세제의 개혁사례와 바람직한 개혁방향
나성린 2005. 12 값 4,000원
 - 탈세와 세무행정
유일호 2005. 12 값 5,000원
 -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
김완석 2005. 12 값 9,000원
-

- 한·일 이전가격 과세실무 비교
정영한 2005. 12
-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나성린·박기백·박형수 2006. 12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김완석 2006. 12
-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
이준규 외 2007. 8
-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
손원익·박태규 2008. 2

| 세법연구 |

- 06-01 • 주요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시사점
안종석·조찬래 2006. 8
 - 06-02 • 주요국의 가산세제도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
한상국·구자은·황진영 2006. 8
 - 06-03 • OECD 주요 회원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비교분석
박명호·정희선 2006. 8
 - 06-04 • 주요국의 이중과세배제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
안종석·구자은 2006. 8
 - 06-05 •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
안경봉·정희선 2006. 11
 - 06-06 • 주요국의 보유과세체계 현황 및 비교
박명호·한상국·송은주 2006. 11
 - 06-07 • 주요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전병목·이승식 2006. 11
 - 06-08 • 주요국의 자녀세액공제와 시사점
전병목·조찬래 2006. 11
 - 07-01 • 경매·공매제도 비교를 통한 체납조세 징수업무의 합리화 방안
한상국·안경봉·마정화 2007. 11
-

-
- 07-02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간접투자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전병목 · 김태훈 · 문예영 2007. 11
 - 07-03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주세 및 주류행정에 대한 고찰
박명호 · 문예영 2007. 11
 - 07-04 • 중소기업지원세제 관련 중소기업 범위의 국제비교
김진수 · 송은주 · 마정화 2007. 11
 - 07-05 •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손원익 · 김정아 · 송은주 2007. 11
 - 07-06 •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연구
전병목 · 정희선 2007. 11
 - 07-07 • 금융허브 국가들의 조세제도
전병목 · 정희선 · 조진권 · 기은선 · 박임수 2007. 11
 - 07-08 •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비교분석 연구
성명재 · 박임수 2007. 11
 - 07-09 •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실태분석
정재호 · 김태훈 2007. 11
 - 07-10 •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홍범교 · 기은선 2007. 12
 - 07-11 • 외국의 세무사제도 연구
박명호 · 기은선 · 김정아 2007. 12
 - 07-12 • 외국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중 최소부과원칙 운영 현황
원종학 · 구자은 · 김태훈 · 조진권 2007. 12
 - 07-13 • 주요국의 환급가산금제도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
한상국 · 구자은 2007. 12
 - 07-14 •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 연구
김진수 · 김정아 · 마정화 2007. 12
 - 07-15 •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주요국의 사례
안종석 · 구자은 2007. 12
-

한국조세연구원 도서회원 가입안내

1. 회원에 대한 특전

- 1) 1년간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간행물(비판매용 도서 포함. 단 일부 용역보고서 등은 제외)을 우송합니다.
- 2) 기발행된 간행물 구입시 4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3) 회원에게는 본원 도서실의 소장도서 및 통계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4) 본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우선 초청대상이 됩니다.
- 5) 가입기간중에 회비가 오르더라도 추가부담이 없습니다.

2. 가입방법

- ◆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 연구원 연구출판팀으로 우송 또는 직접 제출하고(Fax 또는 전화신청도 가능)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 회원의 자격기한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 ※ 2~3년간 장기가입도 가능합니다.

3. 연간회비

- ◆ KIPF 도서회원 가입비 : 10만원
- ◆ 『재정포럼』 구독료 : 3만원
- ◆ 도서회원 가입 및 『재정포럼』 구독 : 12만원

4. 회비납부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계좌번호 : 441-05-000011)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

문의처 : 우편번호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번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도서회원 담당자
TEL : (02)2186-2132 Fax : (02)2186-2139

연구결과 요약집

2008년 8월 5일 인쇄

2008년 8월 8일 발행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代) FAX: 2186-2179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8

ISBN 978-89-8191-394-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